

산안법 일부 적용 제외에 따른 '안전 차별' 해결을 위한

# 산안법 현업업무 고시 확대 국회 토론회

9월 12일 (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공동주최 : 민주노총, 정의당 이은주 의원

## ● 현장 증언

**표복순** 특수교육지도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특수교육지도사분과장

**임정금** 특수교육지도사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특수분과 부분과장

**황연희** 과학실무사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구리남양주지회장

**송보라** 과학실무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수석부지부장

**구자연** 방문간호사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지자체분과장

**정지매** 수도검침원 공공운수노조 자치단체공무직본부 경기지역지부 부지부장

## ● 발제

산업안전보건법 현업고시 확대의 필요와 민주노총의 요구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 ● 토론

**이승우**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

**김종진**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 공동위원장

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 토론회 및 자료집 순서

발제 및 토론자		페이지
■ 인사		P.5
■ 좌장 : 전수경    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		
■ 현장 증언 - 현업고시 확대의 필요		
특수교육실무사(지도사)		
01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표복순 특수교육지도사분과장	P.9
02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특수분과 임정금 부분과장	P.11
과학실무사		
03	전국교육공무직본부 황연희 구리남양주지회장	P.18
04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송보라 수석부지부장	P.20
방문간호		
05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구자연 지자체분과장	P.23
수도검침		
06	공공운수노조 자치단체공무직본부 경기지역지부 정지매 부지부장	P.26
■ 발제		
	구멍 뚫린 산안법 방치하는 윤석열 정부_산안법 적용제의 폐지와 현업고시 확대가 필요하다	P.36
	-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최명선	
■ 토론		
	민주노동연구원 이승우 연구위원	P.54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 김종진 공동위원장	P.62
	고용노동부 박희준 산업안전보건정책과장	P.69
■ 질의응답 및 플로어 토론		



## ◆ 인사말

양 경 수 || 민주노총 위원장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정부의 가장 큰 책임을 방기하고,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제도 개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책임자의 처벌 면제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TF를 발족하고, 원청의 책임회피를 돕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전면 개정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국정과제였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직업병 인정기준 개정과 추정의 원칙 등 개선 및 확대가 필요한 부분은 논의를 지연시키며 미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정부의 개악 추진에 밀려 등한시되고 있는 문제 중 하나인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문제를 토론헬기 위한 자리가 값지고 의미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일터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기본법입니다.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법 스스로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이 법에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도 차등을 두어, 어떤 사업은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법의 반만 적용하고 안전할 권리를 반쪽만 보장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과 같이 적용 제외된 노동자들은 안전교육,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안전 정책에서 배제되어 최소한의 기초 안전도 지켜지지 않게끔 내몰리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안전 문제가 심각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문제를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습니다. 2016년부터 제기된 이 사안이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고시로 개정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정부 역시 안전의 기본이 무너지는 문제를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현업고시에 대한 재검토 기간이 올해 6월이었습니다. 정부는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하면서도 검토를 핑계로 오랜 기간 시간만 허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특수교육지도사(실무사), 과학실무사, 사서, 수도점검, 방문 간호사, 공공행정 콜센터 상담사, 주차 단속 등 수많은 노동자들이 스스로 산업재해의 위험을 증언하고 현장을 조사하고 증명을 재차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더 이상 일터의 노동자들을 사각지대에 두어선 안 될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생면과 안전에 대한 권리를 과거로 후퇴시키는 윤석열의 생명안전 개악을 막아내겠습니다. 오늘의 토론회로 현업고시 확대의 문제가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에게 얼마나 시급한 일인지 다시금 알리고자 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함께 주최해주신 정의당 이은주 의원님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현장의 실태를 증언해주시기 위해 나서주신 현장 조합원 동지 여러분과 발제 토론에 함께해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민주노총은 모든 일터의 노동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으로 안전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투쟁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9월 12일  
민주노총 위원장 양경수

## ◆ 인사말

이 은 주 || 정의당 국회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공공행정 분야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마련된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작년에 산업안전보건정책의 보편적 준거점으로 인정받는 <로벤스 보고서>(Robens report, 정식명칭 “일터에서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보고서”)를 번역하여 발간한 바 있습니다. 영국은 보고서의 권고를 기초로 산업안전보건 법제와 시스템을 개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일터를 가진 나라 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영국에서, 강력한 처벌규정은 두지만, 행정이 모든 것을 점검할 수 없기에 등장한 것이 바로 자기규제라는 원리입니다. 최근 정부도 이 자기규제라는 원리를 산업안전보건정책에서 핵심 원리로 내세운 것은 적어도 원리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 규제에서 핵심적 요소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현장에서 노동자가 참여해서 점검할 수 있는 안전보건예방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법 체계에서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체제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규제를 내세우고 있는 정부 임에도, 여전히 다수의 노동자가 산안법의 적용 조차 받지 못하고, 산보위를 통해 작업장 내 예방정책을 수립할 권리조차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 적용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시행령에서 적용 제외 사업 또는 사업장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오늘 참석하신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 영역의 노동자 상당수가 적용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대로, 현업업무 종사 대상 직종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노동안전을 위한 환경 구축이나 산업안전보건교육 등 산보위 안전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등 문제가 큼니다. 발제



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 현업고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유로 기본적인 안전 장구조차 지급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신 교육서비스 영역의 특수교육지도사는 업무 중 상해 및 근골격계질환 등 직업성질환에 노출된 주요한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적용을 못 받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자라고 할 수 있는 방문간호사, 수도검침원처럼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에 있는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목숨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되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사각지대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너무나도 큰 구멍들이 존재하는 우리 산업안전보체계를 보완하여, 그 구멍에 생명과 안전이 채워지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공공부문 내 현업 종사자 기준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향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논의가 진전되길 바랍니다. 저와 정의당은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끝까지 힘을 쏟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9월 12일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 산안법 보호아래 더 안전하게 지속적으로 일하고 싶습니다.

---

표복순 | 특수교육지도사(실무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특수교육지도사분과장  
(경기도 고양시 서정초등학교)

## 산안법 보호아래 더 안전하게 지속적으로 일하고 싶습니다.

저는 경기도 고양에서 2006년부터 특수교육지도사로 근무하고 있는 표복순입니다.

전국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특수교육지도사(특수교육실무사)선생님께서는 아이들의 성장과 다 함께 동행 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 위해 아이들의 꼬집힘, 활킴, 발차임, 물건을 던져서 생기는 멍과 상처들을 몸으로 받아내시면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상처가 나고 휠체어 아동을 이동시 안고 이동시키고 급하면 업고 이동시키느라 허리통증 손목, 어깨통증에 병원치료로 아이들을 지원하고 계시면서도 “이 정도로 산재가 되겠어?” 하십니다.

저 또한 계단 이동 시 아이를 업어서 이동시켜놓고 다시 휠체어를 들고 내리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 생활환경이 아직도 경사로 보다는 계단이 많이 있기에 때로는 저보다 체격이 큰 아이들을 온 힘을 다해 들고 내릴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저는 2009년 병설유치원 근무시 아동을 진정시키기 위해 뒤에서 안아주는 과정에서 아동이 고개를 뒤로 들면서 얼굴을 가격하여 코에 골절을 입었습니다.

병원진료 후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에 산재신청을 하니 행정실에서는 '선례가 없었다. 모두 개인 치료한다'는 어이없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직접 알아보고 산재신청 후 산재승인을 받았습니다.

근무 중 골절은 산재인청을 1심에서 인정받았지만 2017년 장애아동을 바닥에서 안고 일어나던 순간 왼쪽다리에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정형외과 진료를 받았으나 이후 통증이 더욱 심해져 결국 상위 병원에 진료의뢰를 해서 좌측 내측반달연골 찢어짐과 좌측 무릎 활막염으로 수술치료를 하였습니다.

특수교육지도사의 업무특성상 평소 신체에 부담을 주는 활동이 많고 재해 이전에 무릎통증이 없었음에도 산재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장애학생을 위해 몸 사리지 않고 학생들이 하나라도 더 경험하고 느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지만 정작 다치거나 반복되는 동작으로 인한 근골격계 이상이 와도 사례가 없고 상관관계가 없다고 산업 재해 인정을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법의 취지에 따라 모든 일터에서 적용받고 시행되어야 함에도 교육서비스업에 있어서는 일부만 적용을 받고 있어 법에 배제된 노동자들은 항상 고통받고 있습니다. 산안법이 특수교육지도사에게도 적용되어보다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의 책임있는 판단을 절실하게 요구합니다.

## 현업고시 확대의 필요

---

임정균 | 특수교육지도사(실무사)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특수분과  
부분과장

# 「안전」을 차별하지 말라!!

저는 대구광역시에서 ○년째 특수교육지도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지도사가 공교육에 도입된 것은 지역마다 조금 다르지만 2008년도에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시행되었기에 그 시기라고 본다면 근속이 오래된 특수교육지도사는 15년 이상을 이 업무에 종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지도사가 현업업무 적용 대상자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에 앞서 저희들의 업무 특성을 먼저 말씀드리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오전 등교지도를 시작으로 쉬는 시간 10분에도 대소변등 신변처리 지원, 교실간 이동지원을 해야되고 점심시간에는 식사지도, 오후 방과후 수업까지 지원한 다음 아이들이 하교한 후에는 교실정리를 하고나면 특수교육지도사는 현실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휴게시간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며 일고 있습니다.

단독 보행이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할 때에는 학생의 안전을 위해 이동시 손을 붙잡거나 팔짱을 끼어야 됩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학생의 용변처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혼자서 학생을 들어서 변기에 앉히거나 안전한 바닥에 눕혀야 됩니다.

근육과 신경 손상등으로 신체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학생을 지원해야될때에는 한쪽 팔이나 어깨, 몸 한쪽을 학생에게 온전히 내어줘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학생의 체중이 전부 특수교육지도사에게 실릴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만성적인 근골격계 질환으로 연결됩니다.

특수교육 대상학생이 처음으로 입급된 학교는 엘리베이터 시설이나 경사로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 그럴때는 학생 지원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특히 급식실, 체육관, 예체능 수업실등 교실 본관이 아닌 별도의 건물에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휠체어가 드나들 수 있는 출입구를 찾기 위해 먼길을 빙 돌아 가야됩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학생과 지도사의 안전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선진국의 경우 학교에서 대소변 처리 활동을 지원해야 할 경우 별도의 신변처리실을 마련하고, 그곳에 리프트가 설치된 기저귀 교환대를 구비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일부 특수학교에서 이제 막 이런 시설들을 설치하는 중입니다.

2017년 특수학교에서 뇌병변이 있는 고2 남학생을 지원한 특수교육지도사의 이야기를 사례로 들겠습니다.

출근 첫 날부터 해당 특지사는 당황스러웠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한 둘이 아닌 특수학교에 휠체어 리프트 버스가 없었던 것입니다.

버스 승하차시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학생은 특수교육지도사나 통학지도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학생을 직접 안아서 오르 내려야 했고 외부로 현장학습을 가려하면 다른 학생들이 모두 하차한 후 얼른 내려서 허리를 깊숙이 굽힌채 트렁크에 실린 휠체어를 꺼내서 편 다음 다시 버스에 올라 학생을 안고 휠체어에 앉혀야 합니다. 다시 버스에 탑승하려면 반대로 학생을 먼저 안아올린 다음 휠체어를 접어서 트렁크에 실어야 하는데 휠체어의 무게 또한 상당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근무하다 보니 특수교육지도사들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면 손목, 허리, 어깨등에 만성적인 통증을 달고 삽니다.

그 통증이 15년이상 누적되다보니 일과후와 특히 방학 기간에는 병원을 다니면서 다음 학기 지원을 위해 자비로 치료를 받으며 생활합니다.

두 번째로는 특수교육현장의 상해와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진 몇 장을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사진 아래 별도 첨부)

2021년 전국교육공무직본부에서 전국에 있는 특수교육지도사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한 결과, 설문에 응답한 1100명의 특지사 중 80.3%가 근무 중 학생의 돌발상황으로 인해 다친 적이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때리거나 꼬집고 활귀어서 다친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학생의 장기적인 교육활동 지원으로 어깨, 손목, 허리등의 특정부위 근육이 파손되어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입으로 물거나 물건을 던져서 또는 물체를 밀어서 다치는 경우가 많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실제로 저의 동료도 학생이 던진 인라인 스케이트에 눈 부위를 맞아 안와골절이 생긴 적도 있고 팡팡 열린 얼음물병을 뒤에서 달려오며 던져서 뇌진탕 치료를 받은 분도 있습니다.

저도 자폐가 있는 6학년 남학생을 뒤에서 붙들고 빵반죽을 하던 중 학생이 머리를 뒤로 젖히며 제 얼굴을 가격하여 끼고 있던 콘택트 렌즈가 빠지고 코뼈에 심한 타박상을 입은 적이 있습니다.

꼬집고 활귀고 깨무는 학생들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특수교육지도사는 한여름에도 팔토시와 보호장갑, 두꺼운 옷을 입고 근무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 제비뽑기로 정해진 자리를 바꿔주지 않는다며 학생이 교사가 실신할 때까지 폭력을 행사한 사건이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그 학생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이었습니다.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우리 노조에서 실시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근무 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학교측의 대응을 묻는 질문에는 40.4%가 학교측 대응이 일절 없었다고 답했으며 산재로 처리했다는 답변은 겨우 0.9%였습니다. 눈이 나빠 안경을 껴야되지만 수시로 안경을 잡아당기는 학생 때문에 부득이하게 콘택트렌즈를 착용할 수 밖에 없던 특지사에게 특수교사는 “이런 일 하다보면 늘 있는 일” 이니 부모님과

학교에는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해서 특지사가 직접 교감에게 피해 상황을 보고하여 피해 배상을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무 중 교사와 긴급히 연락해야 할 경우를 대비해서 특수교육지도사들은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근무하기도 합니다. 학생의 돌발행동으로 인해 안경부터 휴대전화, 입고 있는 옷등이 망가진 경험은 1100명중 660명이 피해를 본 적이 있다고 답변한 반면, 이에 대한 파손처리 보상은 89.2%인 576명이 자비로 처리하였다는 답변은 매우 대조적입니다.

참고로 특수교육지도사는 교육공무직 중 최저임금 겨우 넘는 가장 낮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이마저도 방학기간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현실이기에 근무 중 발생한 상해와 물적 피해를 자비로 처리하기에는 경제적인 부담도 상당합니다.

극소수이지만 산재로 인정을 받는 경우에도 자리를 비운 특수교육지도사 대체인력 채용에 소요되는 인건비 부담을 토로하는 일부 학교에서는 아파도 마음 편히 쉬지 못하고 출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학생들의 통학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들이 대부분 교육청에 배치되어 있지만 부산이나 울산 일부 학교에서는 통학지도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공무직이 없어 특수교육지도사가 통학 업무까지 담당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특수교육지도사중에는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비전공자입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실시한 설문에서 보조공학기기 사용 및 안전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69.1%가 안전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답하였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고성 재해와 업무로 인한 질병들로 고통을 겪고 있는 특수교육지도사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특수교육지도사가 학교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안전 매뉴얼 조차 없습니다.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평등한 인격체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특수교육지도사들의 안전문제는 거의 방치된 상태입니다.

얼마 전 유명 웹툰 작가가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하면서 발생한 사건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 했습니다. 특수교사가 교육 활동중 발생한 각종 상해 사진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었고 이에 대해 화답하듯 교육부는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정 제4장에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내용을 포함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눈에 띄는 대목은 학생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보호장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과 생활지도 불응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보아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지속적인 생활지도 불응에 대해서는 학교장에게 학생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며 저는 참 씩씩했습니다.

특수교육지도사는 아침 출근부터 저녁 퇴근시간까지 법정 휴게시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을 특수 교육대상학생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대면하며 근무를 합니다. 특수교사의 상해 사진이 마스크를 뒤덮고 그들이 겪는 고충이 많은 이들에게 전달될 때 정작 학생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학생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며 여러 돌발행동에 노출되어 부상을 당하는 특수교육지도사의 이야기는 단 한 줄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특수교사의 상해정도와 업무적 고충이 그러할진데 정작 학생들과 밀착되어 지원을 하는 특수교육지도사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학생이 갑자기 교실 밖으로 뛰어나가려고 할 때 안돼라고 소리치면 정서적 아동학대이고 다급해서 손을 뻗쳐 학생을 잡다가 목덜미에 흉터라도 생기면 신체적 학대이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방임이라고 우리는 우스개로 이야기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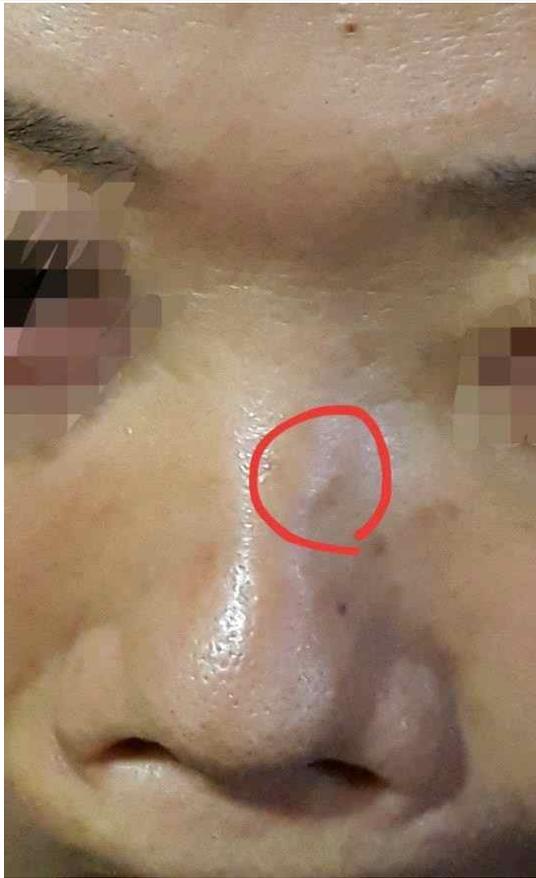
길게 이야기 드렸지만 결론은, 학교가 안전해야 아이들도 안전하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학교가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교육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모든 교육공무직들이 차별없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술수업 도중 칼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돌발행동으로 손가락을 크게 다쳐 봉합한 사고



깨물림 사고로 인하여 허벅지 살을 떼어 사고 부위에 피부 이식 수술을 받음



학생이 던진 물건에 맞아 코뼈가 골절되어 튀어나옴 (붉은 동그라미)



학생이 커피포트에 담긴 뜨거운 물을 부어 손에 화상을 입음



꼬집힘이 반복되어 심하게 멍이 든 모습



살점이 떨어질 정도의 꼬집힘 사고



학생의 손톱에 심하게 상체를 긁힘

## 현업고시 확대의 필요

---

황연희 | 과학실무사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구리남양주지회장

## 학교 노동자 산안법 적용 확대 필요성(과학실무사)

### 1. 열악한 환경(근무환경, 과다업무) - 오랜 경력

- 근무 환경의 열악성(외진 창고, 시약, 폐수보관, 준비물의 다양성)  
※ 과학실은 잘 꾸미는데 비해 과학 준비실은 신경을 덜 쓴다.(협소)
- 과다업무로 인한 고유업무 지원의 어려움 ⇨ 전문성, 자존감 하락 ⇨ 업무효율성(집중력 저하) 저하  
⇨ 그로 인한 사고 발생율을 높임
- 가장 중요한 교사와 같은 교과서 연구를 해야 수업지원이 원활하고 안전에 유의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주변 인식이 부족함.

### 2. 약품 취급으로 인한 위험성

- 초등 10~15가지의 유해위험물질을 취급. 중,고등의 경우 취급하는 약품만 100~150여가지에 달함.
- 매해 평균 300여건의 사고 발생. 자상, 창상(파상풍)등 작은 사고까지 하면 1,000여건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
- 시약을 보관하는 장소(밀폐시약장, 폐수보관장)는 가능한 별도로 지정 배치되어야 하나, 근무하는 한 공간에 위치 (사진자료)

### 3. 각종 사고 및 질병의 발생

- **약품 등으로 인한 질병의 경우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 - 오랜 기간 거쳐 발병**
- 학교 현장에서 가장 유해화학물질을 많이 다루고 있는 직종
- 최근 수은, 포름알린, **메탄올(실명)**, [중크롬산암모늄(발암물질)] 몇 년여에 걸쳐 100여건에 가까운 사고 발생
- 초기 산재사고 개인(문송면-수은(HG)), 집단(원진레이온-이황화탄소(CS<sub>2</sub>)) 등 약품으로 인해 발생
- 기본적인 자상, 창상, 화상 등의 사고 및 근골격계 질환은 기본이고, 폐질환(비결핵항상균) 및 각종 암 발생(사망자 발생 지역도 있음.)-사진자료
- 과다한 업무(유관업무 및 행정업무)의 전가로 인한 고유업무 방해 및 그로 인한 위험성
- 공간적 문제(협소한 공간, 높은 공간) - 근골격계질환

### 4. 고유업무를 무시한 각종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업무 전문성 및 자존감 하락 등의 정신적 피해

- 지역별 차이 존재하나 다수지역에서 문제 발생
- 학교 현장에서 근무경력이 오래된 분들이 많음
- 과다업무로 인한 조기 퇴직자 발생
- 일이 없다, 혹은 논다는 주변의 인식 및 이야기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업무전가를 시키는 경우)  
예) 과학실무사의 업무를 이해하지 못하고, 교사는 수업을 하는 동안 뭐하느냐? 등  
\* 과학실의 업무구조상 겉으로 보여지는 업무가 아니고,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 눈에 띄지 않는 일을 하다보니 일없이 논다는 편견이 심함.
- 인천지역의 마스크보도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가 진정어 과학실수업이 진행되면서 과학실 사고 발생율이 2 배 이상 증가하였다는 보도자료도 있다.

학교 과학실 사고 느는데...과학실무사는 즐었다(인천일보-2023.05.17.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94418>

## 현업고시 확대의 필요

---

송보라 | 과학실무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수석부지부장

안녕하세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수석부지부장 송보라입니다.

저는 12년 차 된 과학실무사입니다.

과학실무사는 과학 실험을 준비하고 실시후 처리 등 실험 전반에 관련된 지원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화학약품, 실험 재료, 기구, 설비 등을 모두 관리하고 실험 중 발생하는 우발적인 사고 등 대부분 과학실무사들이 처리를 합니다.

과학 실험 수업이 끝나면 다음 수업 사이 휴식시간 몇 분 동안에 실험 재료나 기구를 재빨리 치우고 다시 세팅하는 것이 급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다보니 뜨거운 삼발이를 맨손으로 만져서 화상을 입기도 하고, 시약을 자주 맨손으로 만지다 보니 피부가 헐고 습진도 생깁니다. 유리 기구를 세척할 때 유리 기구가 깨져서 고무장갑을 뚫고 들어가 찢리고 베이는 사고도 빈번히 발생합니다.

무거운 실험기구 운반도 잦기 때문에 근골격계 질환도 많이 발생하고, 실험기구를 들고 옮기다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지고, 바닥의 전기배선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고도 있어 퇴원 후 치료를 위해 병원 한의원을 정기적으로 다녀야 하기도 합니다.

포르말린 유출로 전교생이 대피하는 일이 생기기도 했고, 수은 온도계가 떨어져 부서져 수은 노출 사고가 있기도 했으며, 각종 약품 정리, 준비와 폐수, 폐시약 처리 중에도 약품 흡입이 당연히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과학실무사가 일하는 자료실에서 화학약품 냉장고를 실험실로 이동시켜 주지 않은 학교들도 꽤 있어서, 그런 곳은 각종 화학약품에서 나오는 안좋은 성분으로부터 노출, 폭발, 화재 같은 대형 사고도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 있다보니 피부질환, 호흡기질환, 불임, 생리불순 등 여러 직업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실제, 이산화탄소 발생장치 실험기구를 만드는 과정에서 뚫린 고무마개에 유리관을 끼우다 깨지면 서 손바닥에서 손등으로 유리관이 관통하는 사고를 당한 과학실무사도 있고, 수은 온도계가 깨졌을 때는 학생들은 모두 나가게하고 그것을 마스크도 없이 맨손으로 쓸어 담아 처리했던 과학실무사들도 꽤 많았습니다.

산재임에도 불구하고 산안법 전반에 대한 이해나 교육이 없어서 개인이 치료비를 부담하거나 후유증을 감당하며 살아왔고, 그렇게 대부분 개인이 알아서 감당하고 살아왔습니다.

이처럼 과학실무사들은 일상적인 위협에 노출되어 있으며 직업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것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 교육과 대책마련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모든 노동자들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와 업무상 재해를 당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과학실무사에게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교육을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참가하여 과학실무사들이 산재에 시달리지 않도록 예방을 위한 논의에 참가해야만 합니다.

노동부는 학교에서 일하는 과학실무사들이 차별 없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즉각 전면 적용받아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산재 예방을 위해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 방문간호사 관련 현업고시 확대의 필요

---

구자연 | 방문간호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지자체 분과장

안산시 방문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지자체분과장 구자연입니다.

방문간호사도 산업안전보건법 현업고시 대상에 포함되어야합니다. 방문간호사는 산업안전보건에 있어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방문간호사는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독거 및 부부노인가정 등 합병증 예방관리나 건강악화 예방관리를 위해 매일 6/7가구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독거 노인이나 부부노인세대이지만 정신질환자나 뇌졸중 지체장애를 갖고 있는 중장년층도 대상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1. 차량운행 사고 관련

- 가구방문은 관용차나 자차를 가지고 방문 운행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주로 다니다보면 이런저런 차량사고에 늘 노출될 수밖에 없지만 자차인 사고의 경우 각 지자체는 물적 인적 변상 처리 대책은 전혀 없으며 단체보험으로 인적상해에 대한 얼마간의 보장만 마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2. 애완동물 물림 사고 관련

- 대상자 대부분이 심신장애인 또는 노인 독거, 노인부부세대다보니 애완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많고 애완견에게 물리는 사례가 자주 발생합니다.
- 애완견에 물려 광견병 주사나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 자부담으로 처리해하는 경제적 부담도, 이후 발생될 수도 있을 후유증에 대한 대책도 전혀 없습니다.
- 방문인력은 이렇듯 다양한 트라우마를 안고 업무를 지속해야하는 상당부분 있습니다.

### 3. 전염병이나 피부 질환등에 노출

- 의뢰된 대상자 첫 방문시 사전 정보 없이 방문하다 보니 결핵이나 간염 등 각종 전염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몇년전 방문인력 전원 잠복결핵 검사했는데 그중 25%가 잠복결핵으로 판정되어 3개월간 약을 복용해야 했습니다.
- 약을 복용해야하는 고충도 고충이지만 업무 중 코로나 이후야 마스크 쓰는 것이 일상이 되어 있지만 그 이전에는 대상자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까봐 마스크 착용은 생각 할 수도 없는 현실이었기에 업무 중 불안감과 스트레스는 오래 근무 할수록 크다고 보면 됩니다.

방문인력이 거의 100% 여성이다 보니 대상자가 독거 남성인 경우 간혹 성폭력이나 성추행이 발생하는 경우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장기간 방문업무를 하는 대부분 인력들이 만성 알레르기 비염이나 피부질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업무과중이나 체력저하로 인한 원인으로 있겠지만 매일 다양한 대상자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상황들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대상자가 준 음료를 한 모금 먹고 순간 살짝 멍한 느낌이 들어 바로 밖으로 나와 119에 전화하여 병원에 갔더니 수면제가 든 음료였다고 합니다.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저 대상자를 믿는 마음으로 처신했다면 큰 사고로 이어지는 불행한 상황에 놓였을 수도 있었겠지요. 몇 개월 후 그 대상자 성폭행 현행범으로 구속됐다는 소식을 듣고는 정말 아찔했다고 합니다.

현장직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폭설이나 폭우등 기상이변이 생겨도 방문을 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으며 차량 접촉사고나 미끄럼 골절사고 등 다양한 산재사고에 노출될 수밖에 없지만 기상이변이 있을 때 딱히 방문을 하지 말라는 지침 조치도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2016년 노동조합 차원에서 28명의 방문간호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했더니 그 중 30~40%가 개물림, 차량 접촉사고, 미끄럼 골절사고, 언어 및 신체 폭력 등의 위험을 경험했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지자체에는 방문인력이 방문간호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방문 인력도 아동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방문인력이 근무하고 있지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교육이나 대책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2005년부터 방문 인력으로 일하고 있는데 20여년전이나 지금이나 안전대책 없이 혼자 방문하고 있으며 달라진 것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 근무환경은 다양한 산재 사고 발생 가능성이 많음에도 별다른 대책이나 법과 규정이 따라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된 실태를 조사하고 법과 제도를 정비할 것을 요구합니다. 특히 형식적인 안전 교육 실시 등은 너무나 무책임한 행정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참고해서 꼭 현업고시가 확대되고 정비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현업고시 확대의 필요

---

정지매 | 수도권검침

공공운수노조 자치단체공무직본부  
경기지역지부 부지부장

안녕하십니까? 공공운수노조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경기지역지부 부지부장 정지매입니다.

수도검침원은 현재 공공행정에서 현업업무 종사자 기준에 속하여 있지않습니다.

현업종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군과 업무의 위험성, 업무의 성격에 차이가 없으며 검침원은 남양주시 시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을 맺고 시에 소속된 공무직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의 수도검침원은 35명이 한달 평균 약 2100전 을 담당하며 검침 시 계량기가 매설된 맨홀 진입, 공사 현장 진 출입, 옥내 계량기 등 검침을하여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있으며 아파트 및 빌라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과 낮은 계량기 위치로 앉았다 일어났다를 수 차례 반복으로 근골격계 이상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야외 작업 시 문제 되는 폭염, 한파, 미세먼지 등 기상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게 없습니다.

계량기 위 적재된 철판 및 대리석 끼임 등으로 작년 2022년도 업무상 산업재해 8건 이상과 개물림 2건, 2023년 5월 현재는 업무상 골절 산 재 3건 개 물림 1건으로 업무상 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 되고 있 으나 지난 6월 시에서 중대 재해예방 교육 진행에 산재가 많은 직군 임에도 공공행정에서의 현업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교육조차 받지 못 하였습니다.

제가 소속된 시청 산업보건위원회에 수도검침원 노동자들의 안전화 및 안전용품 지급 안전으로 논의하자 안전을 보냈으나 시청 측은 현업근로자가 아닌 근로자 관련 사항이며 부서 자체 협의 사항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 고용노동부에 공공행정에서의 현업 종사 기준 에 부합하지 않아도 수도검침원 안전을 위해 안전화 지급 해야한다는 질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노동자는 사용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안하겠다는게 아니라 안전하게 일하고 싶어 그에 관련 논의하여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는 건데 왜 노동자 안전에 대하여 사용자가 아닌 노동자인 제가 고용노동부에 질의 답변을 받아 가며 요청하여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비단 검침원뿐이 아니라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지급된 불편하고 위험한 안전용품을 교체 요구를 하면 사용자 측은 매번 예산이 없다는 핑계와 다시 구매 해야 한다며 늘 잘 사용 하던 장비 용품에 대한 예산을 깎아 지급 받던 용품도 값싼 안전용품으로 대처하여 변경하며 지급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노동자는 현장에 실질적으로 근무하여 안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용품이 있음에도 안전에 대한 용품 지급 요구도 쉽사리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부에서 만든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등을 적용 받는 우리 수도검침원 공무직의 현업 종사업무 누락을 공공행정 에서의 현업업무 종사자 기준을 다양한 직업, 직군이 있음에도 여섯 개 정도의 업무만 고시할게 아니라 현업 종사업무에 차이가 없는 수 도검침원을 추가하

여 사용자에게 노동자들의 안전에 경각심과 노동자 에 대한 보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의무 부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공공행정 업무만이 아닙니다. 직종과 규모에 관계 없이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생명이 존중받고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노동자들은 연대하며 투쟁하고 쟁취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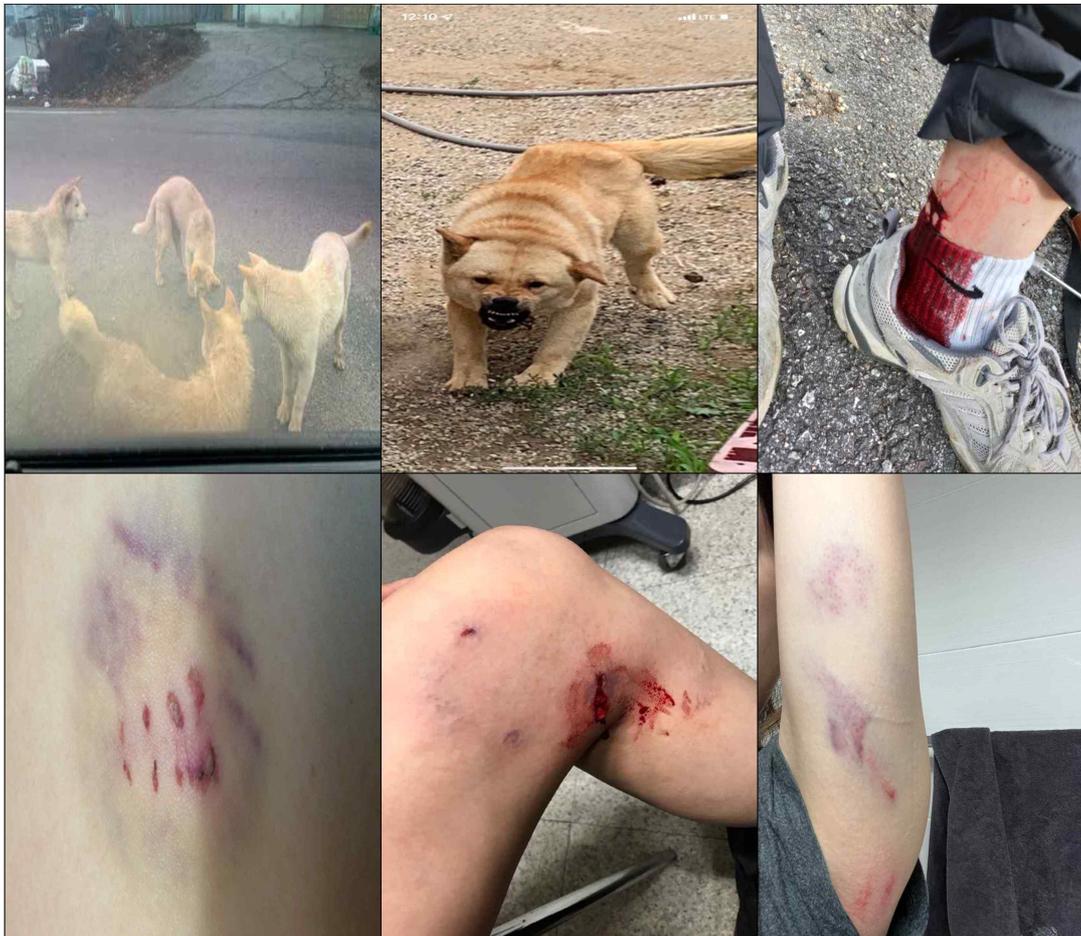
하나. 모든 노동자가 일터에서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 하나. 모든 노동자가 존중받는 안전한 일터

하나. 모든 노동자가 안전에 대하여 권리주장 하는 일터가 되도록 우리 모든 노동자가 더 가열차게 투쟁합시다.

## 수도 검침 노동자의 노동환경

- 수도검침원의 업무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순 업무라고 알고 있다. 계량기 검침하기 위해 현장 업무 수행 중 계량기 매설된 맨홀 진입, 공사 현장 진 출입, 옥내 계량기 검침, 개 물림, 뱀, 벌레, 등에 상시 노출되어 안전사고 발생 위험율이 높고 아파트와 빌라 검침 시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여야 하며 낮은 계량기 위치로 200회씩 앉았다 일어났다 반복으로 수도검침원은 근골격계 이상도 호소하고 있다. 그 밖에 대면 업무 과정에서 폭력 및 성범죄와 감정노동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있다. 고용노동부의 공공행정에서의 현업업무 종사자에 수도검침원 노동자도 고시 확대가 되어 사용자에게 노동자에 대한 보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의무 부여하도록 해야 한다.

### 수도검침원은 담당 지역을 가가호호 방문하며 개물림에 노출



수도 계량기는 땅속에 있어 맨홀 밀폐 공간 검침시 부실한 사다리로 추락 및 질식위험 노출, 그로 인해 최근 양주시, 서울시에서는 검침원 질식 사망사고가 발생 되었고 지나가는 시민이 뚜껑을 닫아 맨홀에 갇힌 적도 있다.





### 이르면 6분 만에 사망...돌이킬 수 없는 '산소결핍' 재해

단비뉴스 기획탐사팀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 발생한 질식재해 193건에 대한 자료를 입수했다. 이중 상수도에서 발생한 질식 사고는 11건이다. 10년 동안 7명이 목숨을 잃었다.

가장 빈번한 질식재해의 원인은 '산소 결핍'이다. 재해가 7번 발생해 4명이 숨졌다. 공기 중 산소 농도가 18% 아래로 떨어지면 산소 결핍에 해당한다. 맨홀의 내벽과 밸브, 상수도관 등 철제 구조물은 물에 닿으면 녹이 슬면서 공기 중 산소를 빨아들였다. 수중 미생물 호흡으로도 산소 농도가 낮아졌다. 맨홀 뚜껑은 빗물을 막지 못한다. 뚜껑 가장자리로 스며든 빗물은 맨홀 바닥에 고이고, 빗물 속 미생물은 숨을 쉬며 맨홀 안 산소를 빨아들인다. 미생물은 덥고 습할 때 개체 수가 빨리 늘어난다. 여름철 산소 결핍에 의한 질식 재해 위험이 더 높은 것도 그 때문이다. 산소결핍으로 발생한 질식재해 7건 가운데 6건이 여름철(7~9월)에 발생했다.

산소 결핍이 각별히 위험한 것은 작업자의 대응 능력이 단시간에 낮아지기 때문이다. 2011년 7월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동의 한 아파트에서 수도검침을 위해 맨홀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던 작업자는 진입과 동시에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측정 당시 산소 농도가 0.125%였다. 조해경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수는 "측정 오차를 고려하면 이 정도는 '무산소'에 해당한다"면서 "산소 농도가 6%보다 낮은 경우 순간 혼절하고 호흡이 정지되며 같은 상태가 6분이 지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아파트 수도검침하던 검침원·관리직원 질식

A 아파트관리신문 · 입력 2011.08.08 16:55 · 호수 877 · 댓글 0



아파트 맨홀 내 배관에서 수도계량기를 확인하던 검침원 등 2명이 가스에 질식해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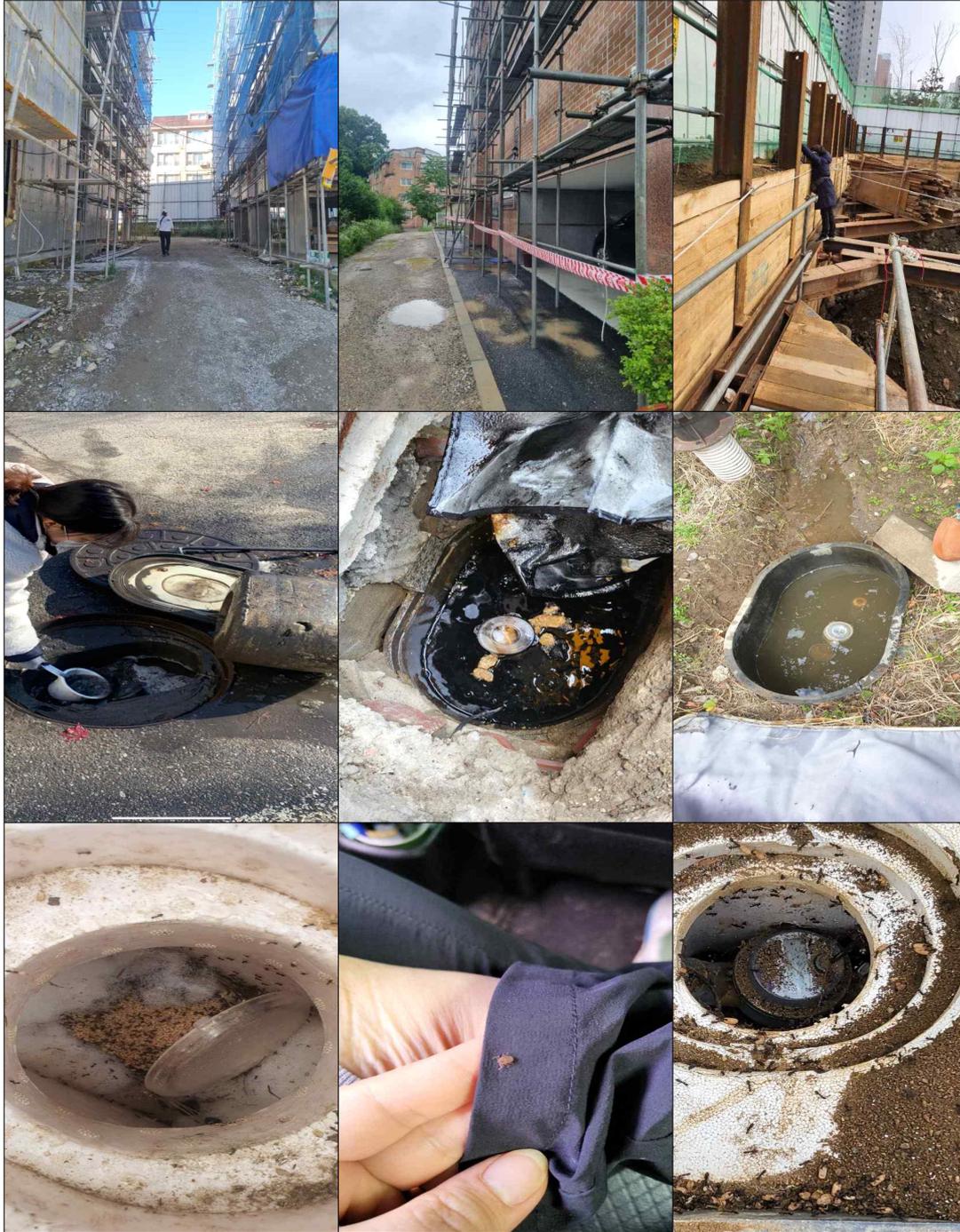
경찰에 따르면 최근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A아파트 앞 수도 맨홀 내 배관에서 수도검침을 하던 M씨와 이 아파트 관리직원 J씨가 가스에 질식해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

경찰은 "맨홀에 먼저 들어간 M씨가 나오지 않고 대답도 없어 J씨가 이를 이상하게 여기고 뒤따라 들어갔지만 역시 나오지 않아 119에 신고했다"는 이 아파트 관리직원 B씨의 진술을 토대로 안전규정 준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땅속 계량기 안에 갇힌 뱀 출몰로 인한 뱀에 물릴 위험에 노출



공사장 진 출입으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계랑기 속 오염수 유입으로 미생물 및 세균감염에 노출



계량기 위 철판, 돌 등 적재로 업무상 산업재해 중 골절이 대부분이며 매달 본인 담당하는 전수(갯수)로 인해 뼈가 다 붙기도 전에 업무를 해야 하는 상황.





**안전교육, 산보위 운영  
구멍 뚫린 산안법 방치하는 윤석열 정부  
산안법 적용제외 폐지와 현업고시 확대가  
필요하다**

---

최명선 |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 안전교육, 산보위 운영 구멍 뚫린 산안법 방치하는 윤석열 정부 산안법 적용제외 폐지와 현업고시 확대가 필요하다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최명선

## 1. 노동자 생명 안전 사각지대 방치하는 윤석열 정부

- 윤석열 정부는 제목만 있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주장하고 있으나, 정작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교육, 산업안전보건위원회등 기본조치도 적용되지 않는 산업안전보건법을 방치하고 있음. 윤석열 정부가 누누이 강조하는 <법치주의>는 노동자 탄압의 도구로만 사용할 뿐 최소한의 기본권도 제외되는 산안법은 방치하고 있는 것임.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안전교육, 산업안전보건위원회등 기본적인 조치를 업종 통째로 적용 제외하고 있으며, 공공부문인 학교, 정부 및 지자체 소속 노동자에게도 <현업> 이라는 이름으로 일부만 적용하고 있음. 특히, 현업고시 조차 적용 제외 대상인 노동자들은 학교와 정부 및 지자체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임. 이는 법치를 주장하는 윤석열 정부가 공공부문에서조차 송송 구멍 뚫린 법을 지속 방치 해 왔던 것임.
- 중대재해처벌법에는 경영책임자의 주요한 의무로 <종사자 의견 수렴>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법정 기구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임. 또한 법정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실질적으로 실시되도록 인력과 예산 배치를 의무로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정작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교육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운영에 대한 법적 의무를 제한 적용하고 있었던 것임.
- 같은 학교에서 일하면서 3개 직종은 안전교육, 산보위를 운영하고 있고, 그 외 직종은 교육과 산보위 뿐 아니라 안전 점검, 감정노동 보호,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 조사 등 기본 조치도 전혀 실시하지 않아 학교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의 차별은 더욱 확대되고 있음.
-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 민간 기업인 경우에는 적용하면서, 중앙정부, 지자체에서 일하면 적용하지 않는 불합리한 차별과 현장의 혼란이 확대되고 있음. 간호사 노동자들은 병원에서 일하면 산안법을 전면 적용받고, 공공기관에서 일하면 적용제외를 하고 있음. 심지어 콜센터 상담원의 경우는 민간 기업일 때 설치 논의를 하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공공기관으로 직영 전환 이후에 <공공행정> 이니 대상이 안된다고 논의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임.

- 산업안전보건법의 <현업고시 확대>는 법령 개정도 아닌 정부의 고시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며 2023년 6월 말까지 현행이 적용되고, 개정 검토 하도록 되어 있으나,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음. 민주노총과 일선 현장의 2년여 전부터 수 차례 요구 했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현업고시 적용 확대의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법치 주장의 허구성을 보여주는 노골적인 가늠대 임.

## 2. 산업안전보건법 현업고시 내용과 적용 확대 필요성

### ○ 산업안전보건법 현업고시란?

- 산업안전보건법 3조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도,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업을 시행령 별표1로 규정하고 있음. 실제로는 시행령에서 일부 적용제외로 명시된 대상이 광범위함. 광산, 원자력 발전소, 항공, 선박의 크루트해서, 사무 서비스 분야, 50인미만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이 산안법 전면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일부 적용 제외의 내용은 업종별 차이가 있으며, 교육서비스업, 공공행정에서는 <안전교육,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임. ◻현장 노동자들의 지속적인 문제제기로 교육서비스업과 공공행정 분야에서 <현업> 으로 일하는 경우에는 적용제외 없이 적용하도록 법이 개정되었고, 그 대상을 명시한 것이 <현업 고시> 임.

#### [ 산업안전보건법 현업고시 대상 업무 ]

공공행정 현업업무	초,중,고,대학 등 현업업무
1. 청사 등 시설물의 경비, 유지관리 업무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	1. 학교 시설물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
2. 도로의 유지·보수 등의 업무	2. 학교 경비 및 학생 통학 보조 업무
3. 도로·가로 등의 청소, 쓰레기·폐기물의 수거·처리 등 환경미화 업무	3. 조리 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시설 관련 업무
4. 공원·녹지 등의 유지관리 업무	
5. 산림조사 및 산림보호 업무	
6. 조리 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시설 관련 업무	

## ○ 현업고시 대상이 아니면 기본적인 보호구 조차 지급하지 않는 현장의 현실

- 법령 문구상으로는 <일부 적용 제외> 이지만 학교와 지자체에서는 실질적으로 현업고시 적용 대상 노동자에 대해서만 산재 예방사업을 하고 있음. 실제 현장에서는 현업고시 적용 직종 = 산안법 적용/현업고시 미 적용 직종 = 산안법 미 적용 으로 진행되고 있음.
- 수도 점검 업무는 위험도가 높아 현장에서 법정 보호구 지급을 요구했으나, 지자체는 현업고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호구 지급을 거부함. 이에 노동조합에서 노동부 본부에 질의회시를 통해 보호구 지급해야 한다는 회신을 받고서야 보호구 지급
-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제도는 부담작업인 경우 시행되어야 함. 학교의 특수실무사, 도서관 사서, 정부 지자체의 수도 점검, 보건소, 사서, 콜센터 상담업무 등은 현업고시 적용제외 대상이라는 이유로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음.
- 학교의 과학실무사는 화학물질 취급으로 누출, 폭발, 화재, 직업병의 위험이 있으나, 아무런 보조치가 진행되지 않음.
-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교육 관련 규정 개정으로 감정노동, 일터 괴롭힘, 산재보상 등이 안전교육 내용에 포함되었으나, 주요한 대상 노동자가 안전교육 적용 제외로 사각지대에 방치. 안전교육 뿐 아니라 감정노동 보호를 위한 사업장 게시, 매뉴얼 작성 등 모든 보호조치가 실시되지 않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음.
- 이는 노동부의 홍보나 지침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현재의 노동부 감독행정 현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노동부 감독이 전면적으로 실시되기도 어렵고, 감독만으로 해결될 수도 없음.
-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는 부담작업이 있는 노동자에게 모두 실시되어야 하지만, 학교나 지자체에서는 현업고시 대상 업무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음
-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교권>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학교의 특수실무사 노동자도 동일한 위험에 처해 있으나, 현업고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런 사업도 대책도 없이 방치되어 왔음.
- 산업안전보건법이 일터에서 적용되기 위해서는 <안전교육>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와 사업주의 의무에 대한 정보제공이 되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통해 예방사업을 실질 추진해야 하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통해 노동자의 의견개진과 노사 심의가 진행되어야 법

이 실질 적용 됨. 안전교육과 안전보건관리체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일부 조항의 적용제외가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로 방치되는 것임.

### ○ 현업 고시 적용 확대에 대한 민주노총의 지속적인 제기

- 2016년 민주노총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안전보건 실태 조사 실시 및 국회 토론회를 시발로 하여, 2017년 2월 노동부는 학교 및 지자체의 현업 노동자 해석 지침을 시행하고, 2019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이후 일부 직종으로 한정하여 시행령 별표를 개정. 당시 민주노총은 전면 적용 요구했으나, 3년 기한 이후 확대하겠다고 답변
- 노동부 공무직 위원회 논의 등에서 2022년 7월, 10월 전면 적용 요구안 제출하고 면담도 진행했으나, 노동부 진행이 없었음. 2023년 5월 9일 노동부와 간담회가 진행되었으나, 노동부는 의견 수렴을 하겠다 정도의 입장. 6월 말까지 의견 수렴을 공고한 이후 3개월 가까이 되고 있으나 지금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음.

### ○ 동일 업무로 적용 대상 임에도 학교, 공공행정으로 분류되어 적용 제외로 분류

- 현행의 별표 규정에 따르더라도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건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2장 안전보건관리 체제는 적용되어야 함. 과학실험지원 업무, 콜 센터 상담 업무 등은 별표 적용 제외 규정에도 없음. 그러나, 학교, 공공행정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제외를 적용받는 것임. 콜센터 상담원의 하청 민간일 때 산보위 구성 논의하다가 공공부문 직고용 전환 이후 공공행정 현업고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산보위 논의 거부를 하는 사태까지 발생함.
- 시설관리, 조리업무 등은 위험도가 높아 학교, 공공행정에서도 현업고시로 적용되고 있으나, 군 부대 등에서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국방 행정으로 분류되어 적용제외 되고 있음.

### ○ 감정노동, 일터 괴롭힘, 산재보상 등이 안전교육 내용에 포함되었으나, 주요한 대상 노동자가 안전교육 적용제외로 사각지대에 방치

- 산안법 시행규칙에서는 안전교육의 내용으로 직업병, 산재보상제도, 직무 스트레스, 직장내 괴롭힘, 감정 노동 교육이 포함되어 있음. 안전교육 적용제외로 규정된 대부분의 직종과 업무가 필요한 안전교육이 실시 되지 않고 있음.
- 사고성 재해를 중심으로 규정되었던 일부 적용제외 규정이 산업구조 변화, 산업재해 유형의 변화, 산업안전보건법 제도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임.

## ○ 일선 현장의 혼선이 가중

- 학교 현장의 경우 현업고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무는 기초적인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도 현장 개선을 위한 논의 구조가 일체 없음. 이에 현장의 실질적인 위험과 해당 노동자의 개선 요구와 현행의 현업고시를 내세운 학교와의 대립으로 현장의 혼선이 가중되고 있음.
- 2023년 6월 민주노총 소속 지자체 사업장 87개 산보위 현황을 조사한 결과 82.8%인 72개 지자체에서 현업고시 외 직종이 산보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음. 이는 실질적 재해예방을 위해 위험도가 높은 직종을 참여시킨 것임. 그러나, 현업고시 대상이 아닌 직종에 대해 산보위 위원 자격 박탈을 요구하거나, 현업고시 대상 직종이 아닌 경우 예방사업 논의를 거부하는 사례가 확산 되고 있음. 현장 실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업고시나 노동부 해석이 지자체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착과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음.

## ○ 정부, 지자체가 인사, 노무관리

- 수도검침 노동자는 지자체와 근로계약을 맺고 있고, 지자체가 전보 발령 등 인사권을 갖고 있으며 예산에 대한 권한도 갖고 있음. 이에 수도검침 노동자가 지자체의 전보발령에 따라 행정 업무로 전보 발령되기도 함. 안전보건관리도 상수도 사업본부가 아닌 지자체의 지침으로 실질적으로 진행해 왔음. 이에 노동조합과 임금 단체교섭도 체결해 왔음.
- 보건소, 방문간호의 경우도 지자체의 인구 규모에 따라 여러 개의 보건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근로계약은 지자체와 체결하고 있고, 인사노무관리도 지자체에서 하고 있음. 이에 보건소, 방문간호 노동자들은 지자체의 인사 전보 발령에 따라, 다른 보건소로 가서 일하기도 함. 예산에 대한 권한도 지자체가 갖고 있으며, 안전보건관리도 지자체에서 총괄적임 규정과 지침에 따라 진행되고 있음. 이에 노동조합과 임금 단체교섭도 지자체와 체결해왔음.
- 이에 노동부에서 수도검침, 보건소 등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의무 사업주에 대한 해석은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회시임.

### 3.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및 현업고시 확대 요구

#### ○ 산안법 시행령 개정 및 현업 고시 확대 요구

- 민주노총 기본 입장은 모든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면적용, 시행령 별표의 폐지임. 일부 적용 제외의 주요 대상인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교육 등은 산재예방의 기초적이고 핵심 내용이며, 현행의 별표는 산업구조, 산업재해 유형, 산업안전보건법 제도와 정책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규정임.
- 민주노총은 자체 실태조사 및 분석을 통해 위험도가 높고 재해가 다발하며, 현장 노동자 요구도가 높은 직종 업무 중심으로 현업고시 확대 및 시행령 개정 요구를 제출함.
- 현업 고시 확대 요구 : 학교 및 공공행정에서 일부 직종 적용으로 위험도가 높으면서도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현장의 혼선이 가중되고 있는 직종 및 업무

가. 교육서비스업 : 특수교육실무사, 과학실무사, 사서, 수상안전요원
나. 공공행정 : 수도검침, 방문 간호사, 농작업 대행. 농기계 임대 및 수리, 단속업무 (주차단속, 하천 단속), 보건소 업무, 도서관 사서, 콜 센터 상담사, 체육시설 강사, 방문 상담

- 시행령 개정 요구 : 위험도가 높으면서도 국방 행정의 영역으로 사각지대 방치된 직종

- 국방 행정 : 시설관리, 환경미화, 급식 조리
-----------------------------

### 4. 학교 현장의 직종별 실태와 현업고시 적용 확대의 필요성

#### 1) 특수교육 지도사, 실무사

##### (1) 업무의 특성과 현황

- 특수교육법에 따라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활동에 대해 지원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규정. 교실정리정돈,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등의 업무도 수행
- 전국의 특수교육 지도사는 현재 8,645명 임.
-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특수아동 지도사 자격증 등 보유 비율이 80%이상
- 업무의 형태는 사회복지 서비스업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돌봄, 상담, 재활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서비스 제공)으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 표준직업분류상으로는 장애인 돌봄 서비스 종사원으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함.

## (2) 산업재해 실태조사 결과

### ○ 특수교육 지도사의 유해위험 요인

- 특수학생 지원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폭언, 때려서 맞거나 꼬집힘이 일상적으로 발생. 안경이 깨지거나, 계단에서 밀리기도 함. 학생의 돌발행동으로 660명이 피해를 본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나 파손 처리 보상 등에 대해서는 89.2%가 자비로 처리했다고 응답
- 학생이 던진 물건에 맞아 코뼈가 골절되거나,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거나, 칼로 손가락을 다쳐 봉합 수술을 하기도 함.
- 휠체어나 보조기에 발이 끼거나, 부딪힘.
- 이동 수업이나 식사, 신변 처리 등에서 학생을 부축하거나, 들어서 옮기고, 여러 명을 동시에 지원하면서 근골격계 질환이 많이 발생.
- 엘리베이터나 경사로가 없는 학교가 많고, 급식실, 체육관, 예체능 수업실 등은 경사로가 없는 경우가 다반사임. 휠체어 리프트 버스가 없는 경우에는 휠체어 운반까지 함.

### ○ 서비스 연맹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조사 (2022년, 1,164명 조사)

- 학교의 점심시간이 60분이나, 40%는 점심 식사를 거의 하지 못한다고 응답
- 업무 중에 사고성 재해로 다친 적이 있다 : 61%
- 학생을 돌보다가 물리거나 맞거나 꼬집힘을 당한 적이 있다 : 63.4%
- 부딪힘 32.1%, 넘어진 25.2%, 물체에 맞음 16%, 베이거나 찢림 11.9%, 깔리거나 뒤집힘 3.8%
- 사고성 재해를 당한 경우에도 산재처리는 3.3%에 불과함. 57.3%는 자기 비용으로 처리. 산재신청을 할 의사가 있는 노동자는 79.6%임. 그러나, ‘산재 적용 여부나 산재처리 절차를 몰라서’에 대한 응답비율이 높음. 산재보험에 대한 교육이 실시 되지 않는 것이 주요 원인 중의 하나임.
- 최근 1년간 1주일 이상 지속되는 근골격계 질환 통증 경험 80%
- 최근 1년간 근골격계 질환으로 의료기관 진단 (허리 32%, 어깨 29.7%, 손/손목 26.7%, 다리/무릎 19.8%, 목, 발/발목의 순임.
-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산재처리는 1.1%에 불과함.
- 산재 예방이나 산재신청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가: 65.4%는 전혀 없다고 응답

### ○ 공공운수 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조사 (2023년 4월, 1,020명 조사)

- 본인이나 동료가 4일 이상의 사고를 당한 경험이 있다. 87%
- 본인이나 동료가 폭언, 폭행 등 정신적 또는 신체적 위협이나 상해나 위험을 경험 92%

- 학교에서 감정노동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있는가 : 하지 않는다 69%
- 학교에서 안전보건에 대해 정기적인 개선요구 듣고 개선에 반영한다 10%. 절차는 있으나 개선에 반영하지 않는다 14%. 76%는 개선 요구 절차가 없거나 모른다 응답
- 특수교육 지도사에게 안전교육이 필요하다 : 100%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특수교육 지도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100%
- 교육청의 현행의 산보위 적용대상은 직종간 차별이다 93%

### ○ 적용확대의 필요성

- 특수교육 지도사의 근골격계 질환, 감정노동에 대해 학교는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 조사, 감정노동 교육, 감정노동 매뉴얼 제정과 이행 등 산업안전보건법의 사업주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음.
- 노동자들의 개선 요구 절차도 없으며, 개선 요구 논의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논의 대상도 아니라며 거부하고 있음.
- 특수교육 지도사는 산업분류로는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장애인 돌봄 서비스 종사원과 같음. 현행 별표에서도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산업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 대상임. 교육서비스업의 학교로 분류되어 일부 적용제외 대상이 되는 것은 부당함.

## 2) 과학 실무사

### (1) 업무의 특성과 현황

- 학교에서 진행하는 과학실험에 화학약품, 재료, 기구, 설비 등을 준비, 관리하고 과학 실험 수업 시 실험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음
- 학교당 1인 단독 근무

### (2) 유해위험 요인

- 초등학교 과학실험실에서 사용하는 시약 중 과산화수소, 백반, 석회수, 수산화나트륨, 시트르산, 아이오딘, 염산, 황산 등 총 14가지 시약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해진 유해인자임. 중학교는 30여가지 임.
- 과학실무사는 시약 사용, 화학약품과 폐수를 취급하고 있음. 보호장비 없이 세척과 관리를 하고 있음. 화학물질 노출, 실험 중 화재 폭발사고에 상시 노출
- 과학 교재기구 파손으로 인한 부상, 가열기구로 인한 화상, 약품 폐수 및 폐기물 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잔류기체로 장기 흡입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

- 화학물질 노출이 되고 있으나 특수건강진단을 실시 하는 교육청은 일부에 불과함.
- 기구 세척 수리 조직관리, 과학실험기구 이동 정리 폐기등 근골격계 질환
- 장시간 실험용 장갑 착용으로 인한 피부질환

### (3) 학교 과학실험실 사고 사례

- 2022. 04.13 경기도 부천 고등학교 과학실험 중 폭발. 수소가스 발생. 부상자 10여명
- 2022년 11.04 부산 사상구 중학교 과학실에서 액체 수은 누출. 전교생 대피. 과학실에 있던 교사, 학생 13명이 두통 호소 병원 이송. 기자재 정리 과정에서 수은 기압계
- 2022. 12. 16 부산 사하구 중학교 과학실험실에서 수은 누출 사고
- 2017. 04.10 부산 중학교에서 비이커 안의 물질 화학반응으로 폭발. 4명이 화상. 1명은 각막 손상
- 2016. 07 부산 중학교 과학실에서 화재 발생

#### ○ 교육활동 중 발생 사고 사례

- 00 여자 중학교에서 과학 시간 실험준비물인 드라이아이스가 든 보온 통을 열다가 마개가 튀어 올라 구경하던 학생의 눈에 맞아 한쪽 눈이 실명
- 00 초등학교에서 학교 운동장과 연결된 공원에서 화산폭발실험 수업을 하던 중 알코올이 폭발 4명이 화상
- 00 중학교에서 염화나트륨 불꽃반응 실험 중 화염 사고로 3도 화상
- 00 중학교에서 과학준비실 청소 중 에탄올 통에 불꽃이 튀어 폭발하여 전신화상 사망.

### (4) 과학실무사 실태조사 (2023. 과학실무사 299명. 전국교육공무직 본부)

- 본인이나 동료가 4일 이상의 사고를 당한 경험이 있다. 55%
- 본인이나 동료가 폭언, 폭행 등 신체적 정신적 건강위험을 경험했다. 53%
- 학교에서 감정노동 보호조치를 하지 않는다 60%. 31% 잘 모르겠다
- 안전보건 관련 개선요구를 할수 있는 절차가 없거나 모르겠다. 63%
-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교육이 필요하다 100%
-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과학실무사가 포함되야 한다. 99%
- 교육청의 현업 직군 적용이 직종간의 차별이다 90%

### (5) 적용 필요성

- 과학실무사에게 안전교육은 적용제외하면서 정부나 공단에서 시약장, 폐수장,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에 대한 점검을 나와서 벌금을 부과함. 직접 업무 종사 노동자 교육은 안하면서 벌금 부과를 하는 것임.

- 과학실과 실험 수업의 위험도가 높고 사고 사례도 많아 위험도가 높은 것은 주지의 사실임. 이에 연구개발, 실험과 관련한 안전관계 법령은 지속 확대되어 왔음. 그러나, 동일유형 업무가 학교에서 진행된다는 이유로 일부 적용제외를 하는 것은 전혀 타당성이 없음.
- 과학실무사와 같은 업무는 현행 별표에서도 적용제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 3) 도서관 사서

#### (1) 업무의 특성과 현황

- 학교 도서관에서 서적 정기 간행물, 시청각 자료등을 분류, 정리, 보업무 도서의 대출, 열람, 반납 업무
- 표준 산업분류에는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며 표준 직업분류상으로도 사서에 해당 됨.
- 현행 별표상으로도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대상이 아니며, 50명 이상의 사업장은 안전교육 적용제외 대상도 아니므로 교육청의 사서는 적용제외 대상이 아님.

#### (2) 유해위험 요인

- 도서정리, 장서점검, 대출반납, 컴퓨터 작업 등으로 근골격계 부담작업 반복
- 도서관 이용자의 폭언등 감정노동
- 도서정리 작업중에 책이나 설비 등에 부딪치거나 떨어짐 등 사고성 재해

#### (3) 실태조사 결과 (2023년. 479명 대상 조사, 전국교육공무직 본부)

- 본인이나 동료가 4일 이상의 사고를 당한 경험이 있다. 93%
- 본인이나 동료가 폭언, 폭행등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위험 경험 74%
- 감정노동 보호조치 실시하지 않는다 62%
- 개선요구 절차가 없거나 모르겠다. 81%. 정기적 개선요구 절차 있고 개선한다는 10%
-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교육이 필요하다 100%
- 교육청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사서의 참여가 필요하다 100%
- 교육청의 현업직종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직종간 차별이다 92%

#### (4) 적용 필요성

- 도서관 사서 업무는 근골격계 부담작업, 감정노동, 호흡기질환 등 유해위험에 노출되어있으나, 현업 고시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런 예방조치가 없음.

- 최근 확대되고 있는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등에서도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도서관 사서의 업무 효율성, 건강권 보호를 위한 조치가 반영되어야 하나. 전혀 논의 구조나 절차가 없음
- 유사업무인 도서관 사서 업무가 산안법 일부 적용제외 대상이 아님에도 학교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적용배제는 부당함.

#### 4) 수상 안전요원

- 학교에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수상안전요원을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수영장의 수질관리 명목으로 각종 화학약품을 사용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아무런 정보제공, 교육 등은 진행되지 않음.
- 일반적인 수영장에서 미끄러짐 사고, 안전관리나 구조활동에서 발생하는 사고성 재해에 노출되어 있음.
- 수영강사나 수상 안전요원은 예술 및 스포츠등 여가 서비스업과 유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제외 대상이 아님. 이에 학교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로 적용제외 되는 것은 부당함.

### 5. 공공행정 부문 노동자 직종별 실태와 현업고시 적용확대 필요성

#### 1) 실태조사

##### ○ 공공운수노조 자치단체 공무원 노동자 조사

- 2023년 4월. 74명 응답
- 농작업 대행 농기계 임대 및 수리, 단속(주차단속, 하천 단속), 보건소, 도서관 사서, 수도 검침. 콜센터, 체육시설 공단, 방문 상담 업무

설문	응답
일하면서 본인이나 동료가 4일 이상의 사고를 당한적 있다.	있다 55%
일하면서 폭언, 폭행 등 신체적, 정신적 위험을 경험했다	있다. 51%
지자체에서 감정노동 보호를 하고 있는가	하지 않는다. 30%, 모르겠다 42%
개선요구를 할 수 있는 절차가 없거나 모르겠다	59%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교육이 필요하다	100%
산업안전보건법 현업고시 직종에 포함되어야 한다	99%
현행의 산보위 구성은 직종간 차별이다	70%

○ 민주일반연맹 지자체 공무원 노동자 조사

- 2023년 4월. 45명 응답
- 농작업 대행 농기계 임대 및 수리, 주차단속, 보건소, 도서관 사서, 방문 상담 업무

설문	응답
일하면서 폭언, 폭행 등 신체적, 정신적 위험을 경험했다	있다. 52%
지자체에서 감정노동 보호를 하고 있는가	하지 않는다 69%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교육이 필요하다	90%
산업안전보건법 현업고시 직종에 포함되어야 한다	90%

2) 직종별 현황과 적용확대 필요성

(1) 수도 검침

○ 업무 현황

- 정기적으로 담당 구역을 방문하여 계량기의 지침을 읽고, 사용량을 기록. 계량기 가동상태를 확인 하고, 표면 부착 이물질 제거, 검침 전산입력, 불량계량 또는 도용사항 점검 확인하는 업무
- 표준직업 분류는 계기 검침원. 산업분류는 수도업
- 수도업은 안전교육이나 안전보건관리체계 적용제외 업종이 아님
- 2022년 서울시 수도검침원 357명 대상 조사에서 하루평균 걸음 2만 5천보, 수전 무게 평균 50킬로그램. 관리 수전 217만개로 1명당 월평균 검침 수전은 3,100개로 일일 평균 221개 었음. 조사대상 노동자의 58%가 근골격계 질환 유증상자로 조사됨.

○ 유해위험 요인

- 수도관 위의 철탑과 맨홀 뚜껑의 무게가 수십킬로에 달함. 근골격계 부담작업. 철탑과 맨홀 뚜껑에 끼임 사고 위험
- 상가 지역의 경우 상하수도관을 지하에 매설. 맨홀 안에 들어가 검침을 하는 경우 유해가스 노출,

질식, 사다리 작업 등의 위험

- 개 물림 사고 빈번히 발생. 겨울철에는 미끄러짐 낙상사고 위험
- 수도 계량기 속에 동물 사체, 쓰레기, 농촌 지역의 수풀 속 계량기 등 감염위험
- 도로 한가운데 있는 계량기로 인한 교통사고, 외딴 지역의 계량기 점검 시 범죄 노출 위험
- 고객 대면 방문으로 폭언, 폭행 등 감정노동 위험도 높음, 성추행 및 성희롱 빈도 높음
- 방문 이동 노동으로 폭염, 한파, 미세먼지 등의 노출 위험, 작업 중 휴게공간 없음.

#### ○ 사고 사례

- 2013년 서울 구로구 아파트 맨홀 내부 수도 점검 작업 중 질식 1명 사망
- 2013년 경북 의성 수도 점검 여성 노동자 성폭행 살인
- 2020년 9월 인천의 수도 점검 노동자 개에 물려 중상. 개에 물리는 사고 경험이 없는 점검 노동자가 없을 정도임.

#### ○ 적용확대 필요성

- 수도 점검 작업은 다양한 위험요인에 노출 되어 있는 지자체 공무원 중 대표적인 위험작업으로 위험성에 대한 지자체의 인식도 있음
- 각 지자체별로 원격점검 도입 근거의 하나로 점검 노동자에게 다발하는 사고와 안전을 내세우고 있음. 원격점검은 지자체별로 시기나 범위가 일률적이지 않아 수도점검 노동자의 사고 위험은 지속되고 있음.
- 유사업무인 수도업이 안전교육이나 안전보건관리체계 적용제외 업종이 아님에도 공공행정으로 분류되어 사각지대에 있음

## (2) 방문 간호사

#### ○ 업무 현황

- 65세 이상 어르신,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하여 건강관리 업무. 2세 미만의 아이와 임산모를 대상으로 가구를 방문하여 건강관리 업무
- 표준산업분류로는 방문복지 서비스 제공업

#### ○ 유해위험 실태

- 정신질환 알코올 중독 대상자에 대한 신변 보호 없이 단독작업 수행
- 고객에 의한 폭언, 폭행 등 감정노동
- 2017년 방문간호사 237명 대상 조사연구에서 1일 평균 1-2가구 방문의 경우에는 51.7% 폭력 경험, 5가구 이상인 경우에는 75.4%가 폭력 경험 있으므로 조사됨. 폭력 발생 후 기관에서 조치를 위한 경우는 26%에 불과하고, 74%는 아무런 조치를 취해 주지 않음.

- 언어적 폭력 65.4%, 신체적 위협 46.8%, 신체적 폭력 5.5%, 성적 폭력 43.9%임.
- 2011년 10월 11일 제주지역 방문 간호사 환자의 딸이 휘두른 흉기에 찔림

○ 적용확대 필요성

- 방문 간호사는 사회복지 서비스업으로 안전교육,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제의 업종이 아님에도 공공행정으로 분류되어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음
-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로 폭언 폭행 등 감정노동을 수행하고 있으나, 현행의 안전교육 내용에 포함되는 감정노동, 정신건강 관련 교육 등은 진행되지 않고, 개선을 위한 절차도 없이 방치됨.
- 유사업무인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이 적용제의 대상이 아님에도 공공행정으로 분류되어 적용제의 되는 것은 부당함.

### (3) 보건소

○ 업무 현황

- 보건소는 검진, 치료, 예방조치, 물리 치료, 상담 등 업무를 수행하며, 일반 병원의 업무와 유사업무임.
- 코로나 - 19와 같은 감염성 질환 대유행 시기에는 엄청난 업무를 수행함.
- 표준산업분류에서는 보건업이며, 보건업은 안전보건관리체제의 적용대상 업종임. 50명 이상 이므로 안전교육 적용제의 대상도 아님.

○ 유해위험 요인

- 병원 종사 노동자와 같이 감염성 질환, 근골격계 질환, 환자나 민원인에 의한 폭언, 폭행등 감정노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적용확대 필요성

- 의료복지가 확대되면서 지자체 보건소 등의 사업이 대폭 확대됨. 그러나, 보건소에서 일하는 노동자에 대한 안전과 건강 보호는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음
- 민간 병원에서 실시하는 감정노동 보호조치등이 그 위험도가 훨씬 높은 공공부문에서 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음.
- 보건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공공행정으로 분류되어 감정노동, 감염성 질환에 대한 안전교육, 산업안전보건위원회등 개선요구 구조에 제외되는 것은 부당함.

#### (4) 농작업 대행 농기계 임대 및 수리

- 농촌 지역 지자체 사업으로 농작업을 대행 서비스, 농기계 임대 및 수리 서비스 업무.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이동 서비스 업무도 진행
- 농기계 수리업무는 장비 결함으로 인한 사고, 장비가 넘어짐으로 인한 사고, 기계 상차 작업시 위험 노출, 수리작업을 위한 화학용제 사용으로 인한 노출, 중량물 운반으로 근골격계 부담작업 진행.
- 표준산업분류상 산업용 기계및 정비 수리업이며 위험도가 높고, 안전교육이나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제외 대상 업종이 아님.
- 자치단체에서 실시한다는 이유만으로 공공행정으로 분류되어 적용제외는 부당함.

#### (5) 방문 상담, 전화 상담

-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각종 정책, 사회복지 사업에 대한 안내, 문의 상담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상담업무임. 콜 센터와 같이 내근 상담, 방문 상담 업무 등이 있음
- 의료급여 관리사는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의료급여제도 안내, 의료기관 이용 상담, 일 급여 제도 안내 방문 상담 수행. 통합사례 관리자, 이동통합사례 관리자, 아동보호 전담 요원, 지역사회복지사 등 상담, 방문 상담이 진행됨. 다문화 가정 혹은 다자녀 가정 출산 가정등 단체교육이 어려운 대상자 방문 교육 진행. 가정 방문시 이유식미 간식 말굽기 실습 등 조리과정에서 위험도 있음.
- 콜 센터와 같은 내근 상담업무는 감염성 질환, 근골격계 질환 등의 위험에 노출, 상담사 노동자들의 가장 큰 위험은 고객에 의한 폭언, 폭행임. 대면 방문 상담인 경우에는 신체적 폭력에도 노출되어 있음.
- 그러나, 콜 센터의 경우 위탁 하청일 경우 실시하던 안전교육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정규직 전환이 되어 공공행정으로 분류되면서 오히려 폐지되었음.
- 상담업무는 안전교육이나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제외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공행정으로 분류되어 적용제외 되는 것은 부당함.

## (6) 단속 업무 (주차단속, 하천 단속)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운영 시설의 주차관리 업무, 불법 주차단속, 하천 단속 업무 수행
- 주차관리 업무 시 지하밀폐 공간일 경우 차량 배출 가스 노출, 어두운 조명으로 인한 넘어짐 사고, 화재위험 등에 노출되어 있음. 주차단속의 경우 교통사고 위험 등이 있음
- 주차단속, 하천 단속 업무는 불법행위에 대한 적발업무 이므로 고객에 의한 폭언, 폭행 위험이 매우 높은 업무임
- 공공행정의 일반적 특성처럼 사무, 관리 등이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현업 성격이 강한 업무이며 위험도가 높음. 유사업무는 적용제외 대상이 아님에도 공공행정으로 분류되어 적용제외되는 것은 부당함.

## (7) 도서관 사서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에서 서적 정기 간행물, 시청각 자료등을 분류, 정리, 보관 업무 도서의 대출, 열람, 반납 업무. 이동도서관 업무 진행
- 도서 정리, 장서점검, 대출반납, 컴퓨터 작업 등으로 근골격계 부담작업 반복. 호흡기 질환, 도서관 이용자의 폭언 등 감정노동. 도서정리 작업 중에 책이나 설비 등에 부딪치거나 떨어짐 등 사고성 재해 발생. 현업고시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런 예방조치가 없음. 이동도서관의 경우에는 다량의 도서를 싣고 옮기는 작업 반복. 도서관 책 먼지로 인한 호흡기 질환 노출.
- 표준 산업분류에는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며 표준 직업분류상으로도 사서에 해당 됨. 현행 별표상으로도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대상이 아니며, 50명 이상의 사업장은 안전교육 적용제외 대상도 아니므로 지자체 도서관 사서가 공공행정으로 분류되어 적용제외 되는 것은 부당함.

## (8) 체육시설 강사

-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수영장 등 각종 체육시설에서 각종 체육활동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는 업무 수행. 정기적인 강습을 진행함.
- 체육활동 과정에서 시설및 장비 사용으로 인한 사고성 재해, 체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성

재해. 강습을 받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고객에 의한 폭언, 폭행을 비롯한 감정노동에 노출되어 있음.

- 체육시설 강사는 예술 및 스포츠등 여가 서비스업과 유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제외 대상이 아님. 이에 중앙행정기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로 적용제외 되는 것은 부당함.

## (9) 사무 행정

- 공공기관의 사무 행정 업무를 하는 노동자의 주요 업무는 민원 처리, 문서작성, 현장 지원 업무들을 수행함.

-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민원 처리 업무에서 민원인에 의한 폭언 폭행을 비롯한 감정노동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으나, 어떠한 예방 대책이나 보호조치도 되지 않음

## 5. 국방 행정 산안법 적용 시행령 개정

### ○ 업무현황과 실태

- 국방 행정은 국가 안위를 지키는 기관으로 육해공군 민방위대를 포괄함.

- 군부대 및 2,000여개의 장병 복지시설의 시설관리 정비 업무를 하는 노동자, 급식 조리 업무를 하는 노동자가 있음.

### ○ 유해위험

- 군 부대 보일러실의 추락사고, 보일러실의 유리섬유, 분진 노출을 비롯하여 시설관리 노동자와 동일한 위험에 노출. 군부대의 경우 노후 된 시설이 많고, 군 부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위험과 중첩되어 위험도가 매우 높음

- 군 부대 급식 조리업무의 경우 절대적으로 많은 식수 인원과 급식 물량, 연중 365일 운영으로 일단체 급식조리업보다 훨씬 높은 고강도 업무이며, 위험 노출도 높음

### ○ 시행령 개정 및 노동부 현업 해석 지침

- 학교, 공공행정 등에서도 현업으로 적용하고 있는 시설관리, 청소, 환경미화 및 급식 조리업무 등은 신속히 현업으로 규정되어야 함. 근본적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우선 긴급 조치로 현업업무에 대한 노동부 지침 해석으로 신속한 안전대책 수립을 요구함.

**공공부문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의 필요성\_ILO 핵심  
협약 준수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

이승우 |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공공부문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의 필요성: ILO 핵심 협약 준수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이승우(민주노동연구원)

## 1. 도입: ILO 핵심 협약을 위반 중인 정부?

- 2022년 110차 ILO 총회는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노동기본권에 포함시켰으며, 그에 따라 155호(산업안전보건 협약)와 187호(산업안전보건 증진체계 협약)가 ‘핵심 협약’으로 격상됨.

- ILO에 따르면, 155호 협약은 산업안전보건 관리의 개선을 위한 기본 원칙과 방법을 국가 단위 및 사업장 수준에서 정립하고 있기에 중대한 의의를 지님(ILO, 2013). 주요 내용은 ▲ 공공부문을 포함한 모든 경제활동에 적용 ▲ 노사 단체와의 협의를 통한 국가 산업안전보건 정책의 수립, 시행, 주기적 재검토 ▲ 노사정의 기능, 책임, 의무, 권리 명시 ▲ 물리적 작업 요소 및 인간 능력을 고려한 기계 설비·작업과정 설계, 적절한 산업안전보건 수준 달성을 위한 훈련, 노동자(대표)의 활동 보장 등을 국가 정책에 반영 ▲ 정부 차원의 산업안전보건 및 노동환경 감독 ▲ 사업주의 의무와 책임(일터 위험 제거, 노동자에게 비용 전가 없이 개인보호장구 및 안전 설비 제공, 산업안전보건 교육훈련 실시 등) ▲ 노동자의 의무(사업주 안전 활동에 협력, 심각한 위험 보고)와 권리(안전보건 관련 정보 취득, 일터 내 위험 확인 시 사업주의 개선 전까지 작업 중지).

- 다음으로 187호 협약의 주된 목적은 155호 협약을 좀더 보완하는 데 있음(ILO, 2013). 주요 내용은 ▲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으로의 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 조치 ▲ 모든 관련 영역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에 대한 노동자의 권리 강화 ▲ 노동자 권리 존중 및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노사정이 적극 참여하는 예방적 안전보건문화를 국가 정책을 통해 형성 ▲ 예방 조치의 필수요소로서 사업장 단위 노사간 협력 촉진 ▲ 안전보건의 기본원칙으로서 위험성 평가 강화 및 위험의 근본 원인 제거 등.

- 187호 협약은 추상적일 수 있는 ‘안전문화’ 개념을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에 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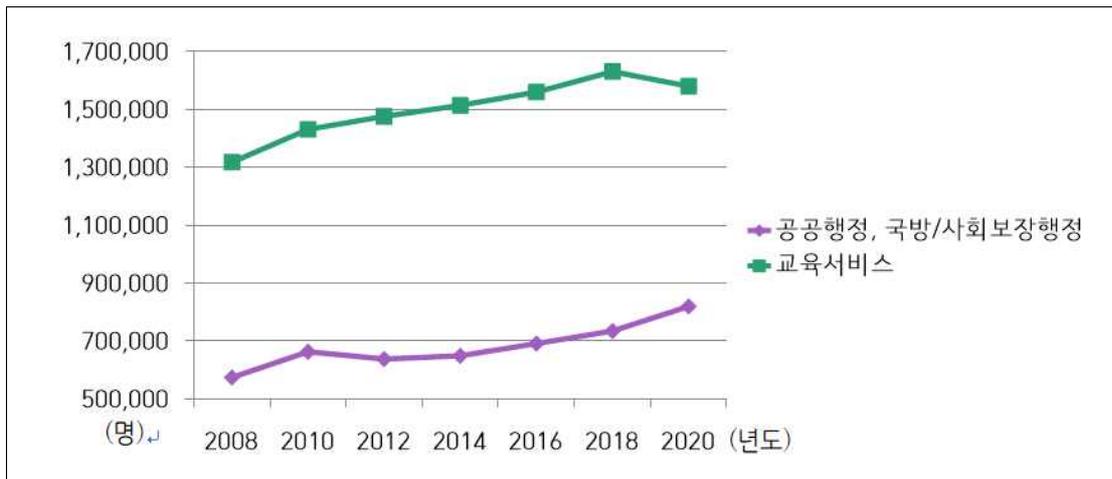
노동자 권리의 존중과 강화, 그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사정 혹은 노사의 적극적 참여, 사고 이전의 예방 우선 원칙 등으로 구체화. 155호 협약이 하드웨어와도 같은 산업안전보건 관리방식과 절차 등을 제시했다면, 187호 협약은 예방적 안전보건 문화라는 소프트웨어를 추가하여 완결적 모양새를 갖춘 셈.

- ILO 110차 총회 결의에 호응해 윤석열 정부는 “노사정이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에 노력할 예정”이라고 발표. 그런데 과연 공공행정, 국방행정,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 등의 공공부문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에 대한 노동자의 권리를 정부에 의해 보장함으로써 155호와 187호가 잘 준수되고 있는가를 검토해 보려 함.

## 2. 산업안전보건법의 핵심 규제에서 배제된 공공부문의 4개 산업

- 분석대상인 공공행정, 국방행정,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토대로 공공부문으로 분류됨. 중앙정부, 지방정부 교육청 등은 확장일로의 다양한 공공 서비스 수요에 부응하여 4개의 공공부문 산업에서의 일자리 유형과 규모를 계속해서 확대해 옴.

[그림 1] 공공부문 하위 4개 산업의 종사자 수(단위: 명, 년도)



-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각 년도).

- 포괄적 명칭으로서 ‘행정’이라고 범주화할 뿐이지 세부적으로 비교해 보면, 민간부문 위험 일터와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단위가 많은 비중을 차지.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조사 통계 분석 결과, 지난 10년 사이 산업재해 역시 큰 폭으로 늘어남.

[표 18] 국가 및 지자체의 사업 및 교육서비스에서의 산업 재해 현황

	천인율			종사자 수		산업 재해자		산재 사망자	
	전체 산업	국가 및 지자체사업	교육 서비스	국가 및 지자체사업	교육 서비스	국가 및 지자체사업	교육 서비스	국가 및 지자체사업	교육 서비스
2014	5.33	3.53	2.74	58,071	499,179	205	1,366	1	5
2016	4.92	3.08	2.57	64,202	513,184	198	1,318	0	7
2018	5.36	7.55	1.86	475,963	325,317	3,594	605	20	3
2020	5.71	7.73	-	608,270	-	4,700	381	22	1

- 자료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조사(각 년도).

※ 교육서비스의 경우, 해당 통계가 교육서비스 규모와 범위를 점차 축소시켜 작성하여 과소추정되어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에 차등을 둔 법령이 1993년 처음 시행되었는데, 이때의 규정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 그 결과 4개 공공부문에는 산안법의 핵심 규제가 제외된 일부 조항만 적용되는 상황. 이를 담고 있는 조항이 산안법 시행령 제2조 1항의 별표 1 규정.

[표 19]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일부)

제2조(적용범위 등) ①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단서에 따라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 및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제2조제1항 관련)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공공행정(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나. 교육 서비스업 중 초·중·고등학교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적용 제외 규정: 제2장 제1절·제2절 및 제3장(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 제1절 안전보건관리체제(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관리자 등의 지도·조언/ 안전관리전문기관 등/ 산업보건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제2절 안전보건관리규정(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 절차/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다른 법률의 준용/ )

2) 제3장 안전보건교육(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안전보건교육기관

- 여기서의 핵심 규제란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교육 관련 내용으로 이들 산업에서는 안전보건을 관리, 담당할 관리책임자가 없어도 무방함. 사업주로부터 안전보건 관련 정보를 얻고, 위험 문제를 논의하며, 개선 대책 수립과 실행을 해나갈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개최할 수 없음. 노동자와 관리자는 안전보건교육조차 받을 수 없기에 안전수칙을 인지하고, 이를 준수하는 데에도 한계.
- 정부는 이러한 업종들이 공공부문에 포괄된다는 이유로, 즉 이들 하위 업종 거의 모두가 일반사무나 집행사무<sup>1)</sup>처럼 덜 위험하다는 자의적 판단 하에 산안법을 전면 적용하지 않고, 핵심 규제는 제외함. 동일 업무를 하는 민간산업 부문엔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 적용의 일관성이 없음.
- 2020년부터 정부가 ‘현업’이라고 지정한 직종은 해당 민간산업 특성에 따라 산안법이 적용되도록 변경. 하지만 공공행정과 교육서비스에서도 극히 일부 직종(청소, 시설관리, 급식)에만 한정됨. 더구나 공공행정 및 교육서비스의 현업과 동일 업무 수행하는 국방행정, 사회보장 행정 노동자에게 적용 안됨. 이 역시도 법 적용이 일관되지 않고 중구난방임을 드러냄.
- 국가가 직접 관할하는 공적 서비스 생산 지점에서 잘못된 규제와 국가의 책임 회피로 인해 4개 산업은 산안법 핵심 규제에 있어서 공백 상태임. 그 결과,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위험은 서비스 생산구조의 최말단 노동자들에게 전가되어 왔으며, 이들은 온몸으로 이를 감내하며, 공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4개 산업부문의 안전보건 실태는 공공부문이라는 대범주 안에 상시적으로 위험과 마주하는 다양하고, 이질적인 업무들이 있음을 보여줌. 공공부문에 속해있지만, 실제로는 그 내부에 민간부문의 위험 산업 특성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하위 업종들이 다수 포진해 있음.
- 지난 30년간 공공부문이라는 이유로 산안법 적용에 차별을 둔 정부 정책이 4개 공공

1) 일반사무, 집행사무라는 표현은 2017년에 고용노동부가 산하 지방관서에 시달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산업 안전보건법 적용범위 판단 지침’(산업예방정책과-526/ 2017.2.3.)에 언급되고 있다.

부문에서의 안전보건 관리가 엉망이었던 결정적 요인임. 이를 통해 산안법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은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일 뿐만 아니라, 법령 적용에 있어서 산업 별 형평성이 취약하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남.

### 3. ILO 155호 및 187호 협약의 준수 여부 평가

- 산안법 시행령 별표 1을 통한 공공부문 4개 산업에서의 산안법 차등 적용 실태는 ILO 핵심 협약의 준수 문제로까지 이어짐. 안전보건에 관한 ILO 핵심 협약은 공공부문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4개 산업에 적용되지 않는 산안법 핵심 규제들은 155호와 187호 협약에 근거해 사업장 단위에서 반드시 이행되어야 내용임.

- 예를 들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기에 187호 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노동자는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체계에 참여하지 못함. 그 결과 155호 협약이 제시한 노동조합 대표의 안전보건 활동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사업주로부터의 안전보건 관련 정보를 취득할 통로가 없음. 사실상 노동조합의 대표권은 부정당함. 아울러 사업주가 이들 노동자에게 안전보건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지 않고, 개인보호장구조차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함. 산안법 적용 예외 조항인 안전보건 교육과 훈련 역시 핵심 협약의 주요 내용임.

- ILO 협약의 준수 여부를 검토하는 ILO 협약 권고·적용에 관한 전문가위원회는 한국이 2008년에 비준한 155호 협약의 적용 범위를 놓고 이미 2010년과 2015년에 문제 제기함.

- 2010년에는 산안법 시행령의 별표 1 조항을 통해 열거된 경제활동 부문이 산안법 적용에서 제외된 사유, 제외시키는 과정에서 노사정이 협의한 방식, 제외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 법 적용 확대를 위한 개선 여부 등을 한국 정부에게 요구. 2015년도 2010년과 유사한 요청을 하였는데, 이때 주목할 부분은 155호 협약의 적용 대상 확대를 위한 진척 사항이 한국 정부로부터 보고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

- 하지만 이러한 전문가위원회의 문제 제기 이후에도 한국 정부는 극히 일부 직종에서의 개선을 제외하고는 기존의 산안법 시행령의 적용 제외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 또한 일부 직종의 적용 제외 조항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노사정 차원의 협의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음.

-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첫째, 산안법 전면 적용이 배제되고 있는 4개 공공부문에서는 ILO 155호 및 187호 협약 중 사업장 단위 내용이 충분히 관철되고 있지 못함. 155호 협약은 적용 예외 노동자를 최소화하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한국은 광범위하게 예외 산업을 규정하였고, 제외 결정에 합리적 정당성이나 사유를 제시하지 않음.

둘째, 155호 협약은 국가 수준에서 노사정이 협의해 적용 예외 노동자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했음에도, 한국 정부는 이러한 절차적 요건을 전혀 준수하지 않음. 일부 직종(현업)을 대상으로 산안법 적용 범위를 확대할 때에도 정부는 노사정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

셋째, 155호 협약은 협약 이행 초기 단계에서 적용 제외 노동자 집단이 있더라도, 점진적으로 제외 노동자까지 확대, 적용해야 함을 명시. 반면 한국 정부는 협약을 비준한 2008년 이후 적용 제외된 다수 노동자 집단을 거의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음.

- 절차적, 실질적 차원 모두에서 한국 정부가 안전보건 관련 ILO 핵심 협약을 충분히 준수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지금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면, 오히려 위반의 소지가 농후함.

#### 4. 향후 개선 과제

- 공공·국방·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 부문의 위험한 일터 환경을 바꾸고, 사전 예방적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은 그리 복잡하지 않음. ILO 핵심 협약의 정신과 취지에 따라 국내 관련 법령을 개정하면 되는 것임.

- 개선 과제로서 첫째, 중장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ILO 핵심 협약이 공공부문에서 충실하게 이행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적용해 나가야 함. 공공부문 내에는 이질적이며, 타 산업적 요소를 지닌 직종이 다양하게 분포. 각각의 업종 특성을 고려한다는 명목으로 산안법 적용을 하위 산업, 심지어 직종별로 달리 적용하는 방식으로는 현장의 복잡다기한 위험 문제와 산업재해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으며, 분출하는 안전 요구도 충족시킬 수 없음. ILO 협약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EU 지침은 공공부문이라 하더라도 군대, 경찰 등 최소한의 수준으로만 적용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EU Directive 89/391/EEC).

- 둘째, 단기적으로는 ILO 155호 협약에 근거하여 노사정 간 협의 속에서 현재 산안법 전면 적용에서 배제된 4개 산업 부문과 업무를 점차 축소해야 함. 이미 민주노총은 4개 산업 중 산재 다발 직종, 노동자 안전 요구 높은 직종을 조사하여 도출하였음. 따라서 이를 토대로 해당 직종에 우선적으로 산안법이 전면 적용될 수 있도록 현업 직종 확대 등 산안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체계 기본원칙 훼손의 위험성 - 제도의 지체와 지연

---

김종진 |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 공동위원장  
유니온센터 이사장

# 산업안전보건체계 기본원칙 훼손의 위험성 - 제도의 지체와 지연

김종진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유니온센터 이사장)

## □ 발제 자료 특징과 의미

- 발제문(최명선)에서는 노동자 생명안전 사각지대 방치 문제(안전교육, 산보위 운영 등)를 지적하고, 산안법 적용제외 폐지와 현업고시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현재 적용제외 대상은 불안정 고용이거나 위험위해 고위험 혹은 안전과 건강에서 산업 직종(표준산업, 직종 분류)과 부문대상(공공 vs. 민간)으로 인해 미/비적용으로 인한 법제도 사각지대 문제(건강, 안전)를 시정해야한다는 것임.

## □ 산업안전보건, 현업 고시 문제

### 1. 법률 적용 제외 포괄성의 위험성

- 산업안전보건법 “3조(적용범위) 이 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에서 명시된 것처럼 ‘시행령 별표1’로 규정한 적용제외의 포괄성이 초래하는 위험성이 크다는 점임.
- 적용제외 노동자 중 사업장이 ‘공공행정’에 있는 곳은 동일 유사 직종이 민간부문일 경우 적용받는 안전보건과 점검,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 조사, 감정노동보호 조치, 산보위 참여에서 모두 예외 대상이 되는 것임. 공공부문에서는 50인이나 5인 미만 사업장(민간위탁, 보조금 등)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로 판단됨.

**시행령 제2조(적용범위 등)** ①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단서에 따라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 및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② 이 영에서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적용제외로 인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해당 직종의 미참여 문제는 ‘현장 지식(lay knowledge)에 기반한 안전과 건강’의 긍정성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는 요인이 됨.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일터와 작업환경을 고려하면 안전보건영역에서 현장 노동자들의 참여는 사전적 예방과 사후적 관리 모든 차원(특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팬데믹 상황)에서 사업 및 사업장(회사, 기관 등)에서 도움이 되는 것임.

## 2. 안전과 건강의 차별을 방임하는 제도

- 문제는 정부가 법의 적용제외없이 적용하도록 한 <현업 고시>는 ‘공공행정 현업업무’(6개 관련 업무)와 ‘초중고등 대학 등 현업업무’(3개 관련 업무)를 과거 기준의 주요 몇몇 대상만을 적시하는 방식으로 했다는 것임. 이런 이유로 시행령 별표1에 따라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제2조1항 관련)”으로 인해, 다수의 사업과 사업장에서 일하는 불안정 사각지대 취약 노동자들이 안전과 건강에 불평등한 위치에 놓이는 것임(별첨 자료 참고).
- 일선 현장에서는 법령이나 고시 등에 적시되지 않는 사항은 일선 현장에서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판단되는 것을 고려하면 현재의 방식은 그 대상 이외에 모든 노동자들은 적용제외 됨. 대표적으로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 조사나 감정노동 예방 사업 등 안전교육 등이 대표적임. 산안법 41조 개정을 통해 ‘고객으로부터의 정신건강 예방’ 등의 제도화를 위해 5년이 되는 시점에서 볼 때 정부의 정책은 변화하는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임.

## 3. 공정하고 평등한 안전과 건강권 확대

- 사실 산업화 이후 산업민주주의(industrial democracy) 이후 산업 시민권(industrial citizenship)의 핵심은 차별없는 일터의 안전과 건강 문제임. 서구에서는 ‘알권리, 참여할 권리, 행동할 권리’를 주요 모토로 아래로부터의 사회연대적 노동안전보건의 시민권을 언급하기도 함. 따라서 산안전법보건의 적용대상 확대(일부 특고 적용)와 적용제외 삭제 및 내용적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임. (토론자 활동·관심 영역에서 보면)무엇보다 ‘안전교육-감정노동 이해와 인식을 가로막는 현행 법령’에 있어서의 적용 제외 조항 폐지가 필요함.
-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 및 사업장 적용이 원칙이고, 공무원, 학교,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모두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이 되어야 함. 그러나 공공부문(중앙행정기관, 중앙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 지자체, 교육청 및 학교) 사업장의 인식은 매우 낮은 상황임. 최고경영진은 물론 담당자들조차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대상임을 인식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것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2조 일부 적용 제외 조항을 삭제 해야 하는 이유임(\* 산안법 41조조차 중앙 공공기관 이행하지 않고 있음, 김종진: 2023).

## 4. 일터 안전과 건강 보호의 시사점 - 독일 사례

- 결국 가장 기본적인 안전교육에서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규칙에 적시된 주요 사항(직업병, 산재보상, 직무 스트레스, 감정노동 교육 등)조차 ‘시행령 별표1’의 고시 문제로 인해 노동자들이 차별과 배제 받지 않도록 현행 법제도 개선(별표1 폐지, 혹은 협업 고시 전면 확대 ▷ 노무를 제공하는 자, 혹은 위험도 높은 직업 업무와 영역별 대폭 추가)을 해야 함.
-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이 모든 근로자와 특수고용 형태의 노무제공자로 확장되었다는 점은 그만큼 산업구조 변화와 기술발전 과정에서 이제는 특정 직종을 하나, 하나 적시하는 방식으로 포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함. 이와 같은 사회경제 및 노동환경 변화를 반영한 것은 독일의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음. 독일은 노동보호와 안전 관련 52번째 보고서(LV 52)에서 직

업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특성과 직업의 예시를 거의 대부분 ‘모든 작업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으로 정의하고 ‘특별한 경우’에 보다 더 보호의 필요성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음.<sup>2)</sup>

1. 특성 영역 : 작업 내용 및 과업 위험 가능성 지표		작업 예시
1.1. 작업의 완성도	활동이 다음의 특성을 포함함 : - 준비와 관련된 행위만 하거나 - 실행과 관련된 행위만 하거나 - 통제된 행위만 하는 경우	컨베이어 조립, 기계작업, 포장, 검수
1.2. 행위재량	취업자가 다음의 사항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 : - 작업 내용 - 작업 할당량 - 작업 방법/과정 - 작업 활동의 순서	컨베이어 조립, 계산대, 기계작동 (예: 편칭), 대중교통 운전
1.3. 가변성(변경가능성)	일방적인 요구들 : - 부족하거나 유사한 작업 물품 및 작업도구 를 제공함 - 짧은 기간(며칠) 동안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도록 지시함	콜센터(일상정보), 컨베이어 조립, 포장작업
1.4. 정보/정보 제공	-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제공함(자극의 홍수) - 지나치게 부족한 정보를 제공함(장기간 새로운 정보를 주지 않음) - 원치 않는 정보를 제공함 - 결함이 많은 정보를 제공함(중요한 정보가 빠짐)	제어실, 관리자, 감독 활동, 스크린 관제 활동, 구조 통제 센터
1.5. 책임	- 역량과 책임이 불명확함	의사, 간호 간호인력, 조종사, 항공 관제사, 버스기사, 운전사, 필수 발전시설 관리인력
1.6. 자격	- 취업자의 작업 활동이 그의 자격에 상응하지 않음(과도함 혹은 충분하지 않음) - 업무에 대한 교육/훈련이 충분하지 않음	모든 작업 활동
1.7. 과도한 감정사용	- 심각한 질병, 사고, 사망처리와 같은 강한 정서적 영향을 주는 사건을 경험하는 경우 - 고객, 환자, 학생 등 타인의 요구에 지속적으로 응답하게 되는 경우 - 자신의 감정과는 무관하게 요구되는 감정을 지속적으로 나타내야 하는 경우 - 고객, 환자 등 타인의 폭력에 따른 위협에 노출되는 경우	<u>의사, 간호인력, 보육교사, 교사, 서비스업 종사자</u>
1.8 폭력, 공격, 트라우마를 야기하는 사건	- 심리적 폭력: 모욕/협박/폭력을 가하겠다는 협박 - 신체적 폭력 : 날뛰는 행위/ 물리적 공격	모든 작업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으나 특히 : <u>고용 및 사회복지사무소, 경찰, 훈련지역, 구조요원, 정신병원 간호, 버스기사, 역무원 활동</u>
	- (언어적 물리적) 성희롱	서비스 직원, 웨이터, 영업직, 공연 예술, 패션업계
	- 습격, 인질로 삼기	주유소, 소매점, 아케이드, 택시 운전, 경비 및 보안 업무, 은행 및 송

2) 독일은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연방정부와 16개의 주정부가 근로자(Arbeitnehmer) 보호 및 안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역할을 분담하고 있음. 근로기준, 산업안전보건, 노사관계에 관한 노동환경의 표준은 연방정부의 노동사회부(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BMAS)에서 주관함. 독일 주정부 위원회(LASI)는 노동 사회 장관회의(Arbeits- und Sozialministerkonferenz, ASMK) 산하기구로 노동세계의 안전, 건강보호의 유지 및 증진, 제품의 안전한 설계 및 시장 감시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 노동 사회 장관 회의에 자문하거나, 국가의 전략적 입장과 산업안전전략을 구현하고 개발하기 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함. 또한 전 연방 주에서 일관된 법률 적용 및 행정 처리가 가능하도록 쟁점이 되는 문제(집행전략, 조직, 인사 보고 및 정보처리 시스템, 훈련 및 추가 교육, 품질 보증과 평가)를 논의하고 처리하는 기구이며, ‘주정부 위원회’는 산하에 6개 소위원회(Arbeitsgruppe, AG)를 두고 있음.

		금업무, 사법 교정업무 농업, 수의사, 동물보호사, 우편배달부, 택배원
	- 동물을 통한 공격(물기, 차기, 쥐어짜기)	
<b>2. 특성 영역 : 작업 조직 위험 가능성 지표</b>		<b>작업 예시</b>
2.1. 작업 시간	- 변경이 잦거나 장시간의 노동 - 원치 않는 방식의 교대근무, 잦은 야간 근무 - 과도한 초과근무 - 충분하지 않은 휴식에 관한 규정 - 대기 근무	구급차서비스, 의사, 제조업 공장, 영업직, 운전수, 돌봄인력, 숙박업
2.2. 작업 과정	- 시간적 압박/ 높은 작업강도 - 오류 및 중단이 빈번함 - 작업 활동이 시간의 관련성이 높음	모든 작업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특히: 기술설비, 수공업, 동행(송영)서비스, 숙박업, 돌봄 인력, 운반서비스, 사업관련 업무, 콜센터, 비서업무, 계산대, 마무리작업
2.3. 의사소통/ 협력	- 개별 작업공간이 고립됨 - 상사 및 동료로부터 지원의 가능성이 없거나 거의 없음 - 책임의 영역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음	크레인 운전자, 경비 및 보안 무역, 간호 인력, 외근 현장직
<b>3. 특성 영역 : 사회적 관계 위험 가능성 지표</b>		<b>작업 예시</b>
3.1. 동료	- 과도하거나 너무 적은 사회적 접촉 - 싸움과 갈등이 빈번함 - 갈등의 유형 : 사회적 압박 상황 - 사회적 지원의 부재	모든 작업 활동에서 발생가능
3.2. 상사	- 관리자로서의 자격이 없음 - 피드백의 부족, 성과에 대한 인정 부족 - 리더십 부족, 필요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지원을 하지 않음	모든 작업 활동에서 발생가능
<b>4. 특성 영역 : 작업 환경 부정적 영향의 예시</b>		<b>작업 예시</b>
4.1. 물리적·화학적 요인	- 소음/조명/위험물질	보육교사, 교사, 콜센터 업무, 제조업 공장, 폭발물 제거 작업, 주방, 보건의료, 실험실
4.2. 신체적 요인	- 적절하지 않은 인체공학적인 디자인 - 힘든 육체 노동	모든 작업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특히: 건설업, 제조업, 농업, 운송업, 배달업, 보건의료, 미용업, 영업직, 소방업무
4.3. 작업 장소 및 정보 구성	- 열악한 작업 공간, 협소한 공간 - 신호 및 지시사항에 관한 구성이 충분하지 않음	모든 작업 활동에서 발생가능
4.4. 작업 도구	- 작업 도구나 장비가 누락되거나 부적합함 - 기계를 설정하거나 조작하기 불편함 - 소프트웨어 설계가 부적절함	모든 작업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특히: -외근 현장직(기술자, 수공업장인) -재택근무, 원격근무

자료 : 노동보호 산업안전 주정부위원회(LASI) Psychische Belastung bei der Arbeit: Erläuterungen und Hinweise für die Überwachung und Beratung. LV52.(2.Auf.). LASI 2021. 부록 위험판단(Gefährdungsbeurteilung psychischer Belastung) 재구성.

## [별첨자료]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제의 시행령 별표1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제2조제1항 관련)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 제외 법 규정
<p>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p> <p>가. 「광산안전법」 적용 사업(광업 중 광물의 채광·채굴·선광 또는 제련 등의 공정으로 한정하며, 제조공정은 제외한다)</p> <p>나. 「원자력안전법」 적용 사업(발전업 중 원자력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p> <p>다. 「항공안전법」 적용 사업(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과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중 항공 관련 사업은 각각 제외한다)</p> <p>라.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제외한다)</p>	<p>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제20조제1호, 제21조(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4조(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장제2절, 제29조(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30조(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31조, 제38조, 제51조(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52조(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53조(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54조(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55조,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 제62조, 제63조, 제64조(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 제65조, 제66조, 제72조, 제75조, 제88조, 제103조부터 제107조까지 및 제160조(제21조제4항 및 제88조제5항과 관련되는 과정금으로 한정한다)</p>
<p>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p> <p>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p> <p>나.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p> <p>다. 정보서비스업</p> <p>라. 금융 및 보험업</p> <p>마. 기타 전문서비스업</p> <p>바.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 기술 서비스업</p> <p>사.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진 처리업은 제외한다)</p> <p>아. 사업지원 서비스업</p> <p>자. 사회복지 서비스업</p>	<p>제29조(제3항에 따른 추가교육은 제외한다) 및 제30조</p>
<p>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을 사</p>	

<p>용하는 사업장</p> <p>가. 농업</p> <p>나. 어업</p> <p>다. 환경 정화 및 복원업</p> <p>라. 소매업; 자동차 제외</p> <p>마.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p> <p>바. 녹음시설 운영업</p> <p>사. 방송업</p> <p>아. 부동산업(부동산 관리업은 제외한다)</p> <p>자. 임대업; 부동산 제외</p> <p>차. 연구개발업</p> <p>카. 보건업(병원은 제외한다)</p> <p>타.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p> <p>파. 협회 및 단체</p> <p>하. 기타 개인 서비스업(세탁업은 제외한다)</p>	
<p>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p> <p>가. 공공행정(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p> <p>나. 교육 서비스업 중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한다)</p>	<p>제2장제1절·제2절 및 제3장(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p> <p>가.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외의 교육서비스업(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업은 제외한다)</p>	<p>제2장제1절·제2절, 제3장 및 제5장제2절(제64조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 다만, 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는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p>
<p>나. 국제 및 외국기관</p> <p>다.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사업장이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포함한다)</p>	
<p>6.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p>	<p>제2장제1절·제2절, 제3장(제29조제3항에 따른 추가교육은 제외한다), 제47조, 제49조, 제50조 및 제159조(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p>

비고: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둘 이상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각의 호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규정은 모두 적용하지 않는다.

# 토론

박희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장





